

제1955호 고양시보

2023년 2월 24일(금)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훈 령

고양시 훈령 제400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	1
-----------------	------------------------	---

고 시

고양시 일산동구 고시 제2023-4호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6
고양시 고시 제2023-84호	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
고양시 고시 제2023-86호	도로명주소 고시	54

공 고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3-104호	공인 신조 개각 및 폐기 공고	56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3-114호	공인 신조 개각 공고	58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3-162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59
고양시 공고 제2023-437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60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2월 24일

고양시 훈령 제400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원관리기관별”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원관리기관별”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별표 1 평화미래정책관의 직렬별란 중 소계란, 일반직계란 및 행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행정.시설란을 삭제한다.

부서별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									
			계	2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평화미래 정책관		소계	16					1	6	6	3	
	일반직	일반직계	16					1	6	6	3	
		행정	10						4	4	2	

같은 표 일자리경제국의 직렬별란 중 소계란, 일반직계란, 행정란 및 행정.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별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									
			계	2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자리 경제국	소계		81			1		4	28	26	18	4
	일반직	일반직계	81			1		4	28	26	18	4
		행정	55					18	18	15	4	
		행정.시설	8					5	2	1		

같은 표 시민안전주택국의 직렬별란 중 소계란, 일반직계란, 시설란 및 행정.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별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									
			계	2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시민안전	소계		136			1		5	41	41	37	10
주택국	일반직	일반직계	136			1		5	41	41	37	10
		시설	53					2	12	18	16	5
		행정.시설	16					3	9		4	

같은 표 도시균형개발국의 직렬별란 중 소계란, 일반직계란, 행정란 및 행정.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별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									
			계	2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도시균형	소계		51			1		3	16	19	10	2
개발국	일반직	일반직계	51			1		3	16	19	10	2
		행정	32					2	8	12	8	2
		행정.시설	9					1	4	3	1	

별표 7 평화미래정책관의 직렬별란 중 소계란, 일반직계란 및 행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행정.시설란을 삭제한다.

부서별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									
			계	2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평화미래	소계		16					1	6	6	3	
정책관	일반직	일반직계	16					1	6	6	3	
		행정	10						4	4	2	

같은 표 기업지원과의 직렬별란 중 소계란, 일반직계란, 행정란 및 행정.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별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									
			계	2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업지원과	소계		21					1	9	7	4	
	일반직	일반직계	21					1	9	7	4	
		행정	10						2	5	3	
		행정.시설	4						3	1		

같은 표 재난대응과의 직렬별란 중 소계란, 일반직계란, 시설란 및 행정.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별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									
			계	2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재난대응과	소계		39					1	12	11	12	3
	일반직	일반직계	39					1	12	11	12	3
		시설	4							1	3	
		행정.시설	3					1	2			

같은 표 도시재생과의 직렬별란 중 소계란, 일반직계란, 시설란 및 행정.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별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									
			계	2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도시재생과	소계		11					1	2	5	2	1
	일반직	일반직계	11					1	2	5	2	1
		시설	8					1	2	3	1	1
		행정.시설	2							1	1	

같은 표 재정비관리과의 직렬별란 중 소계란, 일반직계란, 시설란 및 행정.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별	직종별	직렬별	직급별									
			계	2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재정비 관리과	소계		16					1	5	5	4	1
	일반직	일반직계	16					1	5	5	4	1
		시설	13					1	3	4	4	1
		행정.시설	2						2			

부 칙

이 훈령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정책관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기획정책관 윤 경 진
	팀 장 성 명	조직제안팀장 김 문 식
	담 당 자 성명 · 전화	박 선 용 (031-8075-2394)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훈령

□ 제안이유

- 고양시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 간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본청의 일부 실·국 및 부서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및 별표 7).

부서별	현행												조정											
	계	2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계	2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본청 계	1,072	2	2	7	3	48	304	380	255	69	2	1,072	2	2	7	3	48	304	380	255	69	2		
평화미래정책관	20					1	8	8	3			16					1	6	6	3				
기업지원과	17					1	7	5	4			21					1	9	7	4				
재난대응과	37					1	11	11	11	3		39					1	12	11	12	3			
도시재생과	17					1	5	6	4	1		11					1	2	5	2	1			
재정비관리과	12					1	3	4	3	1		16					1	5	5	4	1			

※ 기타 : 정무직, 전문경력관

고양시 일산동구 고시 제2023-4호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성석동 제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1. 책임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경기북부지역본부)
2.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 성석동 제2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 일산동구 성석동 643번지 일원 460필지 261,624㎡
4. 위탁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5. 기타 : 지적소관청과 협의하여 조사·측량 수행

고양 GB해제취락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고양 GB해제취락의 실효된 공원 관련 등 47개 취락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8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02. 24.

고 양 시 장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9,814	감) 149,814	-		
폐지	207	응달촌	어린이공원	벽제동 245-2 일원	1,515	감) 1,515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08	빈정동	어린이공원	대자동 16-1 일원	1,500	감) 1,500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09	사리현	어린이공원	사리현동 17-4 일원	1,529	감) 1,529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10	월현	어린이공원	사리현동 39-4 일원	1,502	감) 1,502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11	늘봄마을	어린이공원	대자동 67-1 일원	1,500	감) 1,500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12	용복원	어린이공원	대자동 134-1 일원	1,510	감) 1,510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13	한오동1	어린이공원	대자동 산173-4일원	1,510	감) 1,510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14	한오동2	소공원	대자동 294-38일원	1,120	감) 1,120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15	안터	어린이공원	신원동 255-7 일원	1,500	감) 1,500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16	새원	어린이공원	대자동 206-3 일원	1,518	감) 1,518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17	큰골1	소공원	오금동 231-2 일원	1,034	감) 1,034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18	큰골2	소공원	오금동 225-4 일원	1,028	감) 1,028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19	영심동	어린이공원	식사동 514-7 일원	1,579	감) 1,579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20	박제궁	어린이공원	주교동 449-2 일원	1,532	감) 1,532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21	수역이	어린이공원	성사동 601-1 일원	1,522	감) 1,522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22	장터마을	어린이공원	주교동 215-1 일원	1,535	감) 1,535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23	덤불말	어린이공원	성사동 236-1 일원	1,815	감) 1,815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24	윗말	소공원	원흥동 436-1 일원	1,470	감) 1,470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25	유골	소공원	원흥동 378 일원	1,403	감) 1,403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26	중고개	어린이공원	지축동 406-5 일원	1,521	감) 1,521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27	절골	어린이공원	지축동167-1 일원	1,839	감) 1,839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폐지	231	서재동	어린이공원	도내동 760-4 일원	1,503	감) 1,503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33	발말1	어린이공원	산황동 605 일원	1,501	감) 1,501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34	발말2	어린이공원	산황동 491-1 일원	1,503	감) 1,503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35	신평1	소공원	신평동 3-28 일원	1,006	감) 1,006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36	신평2	소공원	신평동 3-167 일원	1,306	감) 1,306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37	오거리	어린이공원	식사동 산72-10 일원	2,014	감) 2,014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38	제청말1	어린이공원	원당동 409 일원	1,505	감) 1,505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39	제청말2	어린이공원	원당동 909-1 일원	1,866	감) 1,866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40	효자골1	소공원	효자동 156-12 일원	1,208	감) 1,208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41	효자골2	어린이공원	효자동 147-4 일원	1,992	감) 1,992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42	청대골섬말	어린이공원	원당동 632-4 일원	1,536	감) 1,536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43	청대골섬말	소공원	원당동 636-3 일원	326	감) 326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44	두포동	어린이공원	관산동 430-2 일원	1,897	감) 1,897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45	백신	어린이공원	백석동 1117-20 일원	2,496	감) 2,496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46	베라산	어린이공원	성사동 190-3 일원	2,037	감) 2,037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47	난점1	어린이공원	현천동 377-2 일원	2,756	감) 2,756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48	난점2	어린이공원	현천동 산95-1 일원	2,355	감) 2,355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49	양지말1	어린이공원	현천동 15-2 일원	1,708	감) 1,708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50	양지말2	어린이공원	현천동 156-13 일원	1,621	감) 1,621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51	가무네1	어린이공원	현천동 51-6 일원	1,718	감) 1,718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52	가무네2	어린이공원	현천동 83 일원	2,627	감) 2,627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53	삼성당1	소공원	토당동 648 일원	1,482	감) 1,482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54	삼성당2	어린이공원	토당동 671-33 일원	1,502	감) 1,502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57	상중대장1	어린이공원	대장동 193-2 일원	1,553	감) 1,553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58	상중대장2	어린이공원	대장동 308-1 일원	6,597	감) 6,597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59	대덕1	소공원	덕은동 120-12 일원	1,464	감) 1,464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60	대덕2	어린이공원	덕은동 157-2 일원	1,681	감) 1,681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64	소애촌서원촌1	역사공원	행주외동 101-33 일원	1,986	감) 1,986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65	소애촌서원촌2	어린이공원	행주외동 173 일원	1,566	감) 1,566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66	소애촌서원촌3	어린이공원	행주외동 212-2 일원	6,657	감) 6,657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67	소애촌서원촌1	소공원	행주외동 501 일원	1,360	감) 1,360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68	피지골	어린이공원	대자동 342-1 일원	1,500	감) 1,500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69	매화정	어린이공원	강매동 109 일원	2,344	감) 2,344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70	위아래독곶이1	소공원	주교동 1031 일원	1,155	감) 1,155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71	위아래독곶이2	소공원	주교동 981 일원	1,328	감) 1,328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72	갈머리1	어린이공원	대장동 산79 일원	1,553	감) 1,553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73	갈머리2	어린이공원	대장동 296-12 일원	2,546	감) 2,546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74	안골뒤꾸지1	어린이공원	내곡동 97-5 일원	1,550	감) 1,550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75	안골뒤꾸지2	어린이공원	내곡동 42-4 일원	1,558	감) 1,558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76	안골뒤꾸지3	어린이공원	내곡동 25 일원	1,515	감) 1,515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77	새마을성동1	어린이공원	행주내동 52-4 일원	3,254	감) 3,254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78	새마을성동2	소공원	행주내동 156-1 일원	1,317	감) 1,317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79	새마을성동3	소공원	행주내동 108-2 일원	959	감) 959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80	맨돌1	어린이공원	행주내동 444-3 일원	1,812	감) 1,812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81	맨돌2	어린이공원	행주내동 740-1 일원	2,229	감) 2,229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82	웃말아랫말1	어린이공원	용두동 261-1 일원	2,060	감) 2,060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83	웃말아랫말2	어린이공원	용두동 336 일원	1,906	감) 1,906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84	웃말아랫말3	어린이공원	용두동 258 일원	1,521	감) 1,521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85	웃말아랫말4	어린이공원	용두동 19-10 일원	1,521	감) 1,521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6-5203호 (06.12.26)	
폐지	292	삼송1	어린이공원	삼송동 84-21 일원	1,565	감) 1,565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5177호 (07.12.17)	
폐지	293	삼송2	어린이공원	삼송동 128-10 일원	2,400	감) 2,400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5177호 (07.12.17)	
폐지	295	삼송4	소공원	삼송동 57-54 일원	1,350	감) 1,350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5177호 (07.12.17)	
폐지	296	삼송5	어린이공원	삼송동 산3-2 일원	1,518	감) 1,518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5177호 (07.12.17)	
폐지	297	삼송6	어린이공원	지축동 765-159 일원	1,755	감) 1,755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5177호 (07.12.17)	
폐지	298	삼송7	소공원	지축동 757-1 일원	990	감) 990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5177호 (07.12.17)	
폐지	302	동산4	어린이공원	동산동 46 일원	2,008	감) 2,008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5177호 (07.12.17)	
폐지	303	동산5	어린이공원	동산동 53-140 일원	1,602	감) 1,602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5177호 (07.12.17)	
폐지	305	화전2	어린이공원	화전동 산71 일원	6,706	감) 6,706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5177호 (07.12.17)	
폐지	306	화전3	어린이공원	화전동 233-2 일원	2,034	감) 2,034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5177호 (07.12.17)	
폐지	307	화전4	소공원	화전동 203-8 일원	1,419	감) 1,419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5177호 (07.12.17)	
폐지	308	화전5	어린이공원	화전동 514-32 일원	1,528	감) 1,528	-	경기도 제2청고시 제2007-5177호 (07.12.17)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07	응달촌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15㎡)	2006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소규모취락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하여 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으로 실효된 공원에 대해 사유재산권 불이익 해소 및 관련법에 따라 공원시설을 해제
208	빈정동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00㎡)	
209	사리현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29㎡)	
210	월현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02㎡)	
211	늘봄마을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00㎡)	
212	용복원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10㎡)	
213	한오동1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10㎡)	
214	한오동2 소공원	• 공원폐지(면적 : 1,120㎡)	
215	안터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00㎡)	
216	새원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18㎡)	
217	큰골1 소공원	• 공원폐지(면적 : 1,034㎡)	
218	큰골2 소공원	• 공원폐지(면적 : 1,028㎡)	
219	영심동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79㎡)	
220	박제궁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32㎡)	
221	수역이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22㎡)	
222	장터마을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35㎡)	
223	덤불말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815㎡)	
224	윗말 소공원	• 공원폐지(면적 : 1,470㎡)	
225	유골 소공원	• 공원폐지(면적 : 1,403㎡)	
226	중고개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21㎡)	2006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중규모취락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하여 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으로 실효된 공원에 대해 사유재산권 불이익 해소 및 관련법에 따라 공원시설을 해제
227	절골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839㎡)	
231	서재동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03㎡)	
233	밭말1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01㎡)	
234	밭말2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03㎡)	
235	신평1 소공원	• 공원폐지(면적 : 1,006㎡)	
236	신평2 소공원	• 공원폐지(면적 : 1,306㎡)	
237	오거리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2,014㎡)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38	제청말1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05㎡)	2006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중규모취락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하여 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으로 실효된 공원에 대해 사유재산권 불이익 해소 및 관련법에 따라 공원시설을 해제
239	제청말2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866㎡)	
240	효자골1 소공원	• 공원폐지(면적 : 1,208㎡)	
241	효자골2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992㎡)	
242	청대골섬말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36㎡)	
243	청대골섬말 소공원	• 공원폐지(면적 : 326㎡)	
244	두포동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897㎡)	
245	백신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2,496㎡)	
246	베라산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2,037㎡)	
247	난점1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2,756㎡)	
248	난점2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2,355㎡)	
249	양지말1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708㎡)	
250	양지말2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621㎡)	
251	가무네1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718㎡)	
252	가무네2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2,627㎡)	
253	삼성당1 소공원	• 공원폐지(면적 : 1,482㎡)	
254	삼성당2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02㎡)	
257	상중대장1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53㎡)	
258	상중대장2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6,597㎡)	
259	대덕1 소공원	• 공원폐지(면적 : 1,464㎡)	
260	대덕2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681㎡)	
264	소애촌서원촌1 역사공원	• 공원폐지(면적 : 1,986㎡)	
265	소애촌서원촌2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66㎡)	
266	소애촌서원촌3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6,657㎡)	
267	소애촌서원촌1 소공원	• 공원폐지(면적 : 1,360㎡)	
268	되지골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00㎡)	
269	매화정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2,344㎡)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70	위아래독곶이1 소공원	• 공원폐지(면적 : 1,155㎡)	• 2006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중규모취락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하여 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으로 실효된 공원에 대해 사유재산권 불이익 해소 및 관련법에 따라 공원시설을 해제
271	위아래독곶이2 소공원	• 공원폐지(면적 : 1,328㎡)	
272	갈머리1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53㎡)	
273	갈머리2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2,546㎡)	
274	안골뒤꾸지1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50㎡)	
275	안골뒤꾸지2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58㎡)	
276	안골뒤꾸지3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15㎡)	
277	새마을성동1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3,254㎡)	
278	새마을성동2 소공원	• 공원폐지(면적 : 1,317㎡)	
279	새마을성동3 소공원	• 공원폐지(면적 : 959㎡)	
280	맨돌1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812㎡)	
281	맨돌2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2,229㎡)	
282	웃말아랫말1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2,060㎡)	
283	웃말아랫말2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906㎡)	
284	웃말아랫말3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21㎡)	
285	웃말아랫말4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21㎡)	
292	삼송1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65㎡)	• 2007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규모취락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하여 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으로 실효된 공원에 대해 사유재산권 불이익 해소 및 관련법에 따라 공원시설을 해제
293	삼송2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2,400㎡)	
295	삼송4 소공원	• 공원폐지(면적 : 1,350㎡)	
296	삼송5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18㎡)	
297	삼송6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755㎡)	
298	삼송7 소공원	• 공원폐지(면적 : 990㎡)	
302	동산4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2,008㎡)	
303	동산5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602㎡)	
305	화전2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6,706㎡)	
306	화전3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2,034㎡)	
307	화전4 소공원	• 공원폐지(면적 : 1,419㎡)	
308	화전5 어린이공원	• 공원폐지(면적 : 1,528㎡)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정

구 분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규모	소규모취락 중규모취락 대규모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통사항)	• 대지규모 - 주택용지 · 최소개발면적 : 60㎡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상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적합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	
공동개발		• 공동개발 - 60㎡미만의 과소토지로서 인접한 토지가 동일소유자인 경우에 규제제어 - 건축물대장상 공유토지로서 등재된 토지인 경우에 권장제어	
분할합병 대상필지		• 분할합병 - 과대필지 및 부정형필지, 도로의 폐쇄에 대하여 분할 및 합병을 권장제어 - 분할이 가능한 필지의 규모는 600㎡이상으로 권장제어 - 분할 및 합병시 모든 필지에 차량출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 필지교환 - 토지소유자간 합의하에 필지의 일부를 교환 - 부정형 필지의 정형화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권장 제어	

■ 변경

구 분	위 치	계획 내용	비고
규모	소규모취락 중규모취락 대규모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통사항)	• 대지규모 - 주택용지 · 최소개발면적 : 60㎡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상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적합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	
공동개발		• 공동개발 - 60㎡미만의 과소토지로서 인접한 토지가 동일소유자인 경우에 규제제어 - 건축물대장상 공유토지로서 등재된 토지인 경우에 권장제어 - 공공기여대상부지내 전체 필지(국·공유지 제외)	
분할합병 대상필지		• 분할합병 - 과대필지 및 부정형필지, 도로의 폐쇄에 대하여 분할 및 합병을 권장제어 - 분할이 가능한 필지의 규모는 600㎡이상으로 권장제어 - 분할 및 합병시 모든 필지에 차량출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 필지교환 - 토지소유자간 합의하에 필지의 일부를 교환 - 부정형 필지의 정형화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권장 제어	

5.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제1종전용주거지역

구 분	중규모 51		비고
	기 정	변 경	
허용 용도	•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 주택은 6가구 이하 •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6세대 이하), 다목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 •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 집회장(제조업소 제외(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 •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단, 연면적 합계 1,000㎡ 미만) •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 •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 관련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단, 최초 개발 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 •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 주택은 6가구 이하(단,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 •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6세대 이하), 다목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단, 공공 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세대주택, 연립 주택 제외) •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 집회장(제조업소 제외(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 •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단, 연면적 합계 1,000㎡ 미만) •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 •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 관련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단, 최초 개발 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 •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

구 분	대규모 77~79 / 중규모 45~50, 52~72 / 소규모 24~43 / 신규 80~89		비고
	기 정	변 경	
허용 용도	•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 •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6세대 이하), 다목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 •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조업소는 제외(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 •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 •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중·고), 바목 도서관(단, 신규 80~89는 유치원 제외) •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 •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석유판매소 •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 •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단,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 •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6세대 이하), 다목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단,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제외) •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조업소는 제외(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 •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 •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중·고), 바목 도서관(단, 신규 80~89는 유치원 제외) •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 •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석유판매소 •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 •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목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전면공지, 대지내조경,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경관, 친환경 계획 등에 관한 사항(변경)

■ 기 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지상으로 돌출되는 구조물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보도부속형 전면공지에 차량진출입 및 주차 등을 물리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볼라드 등)의 설치 가능하다. 또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보도부속형 -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 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서 조성 - 차도부속형 -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와 전면도로의 포장 및 조성방법에 따라서 조성									
대지내 조경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공통사항)	- 자연환경이 양호한 주변과 조화로운 환경을 유지하고 전원적이고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지정<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대지내 조경면적</th></tr></thead><tbody><tr><td>연면적 2,000㎡ 이상</td><td>대지면적의 20%이상</td></tr><tr><td>연면적 1,000㎡~2,000㎡미만</td><td>대지면적의 15%이상</td></tr><tr><td>연면적 1,000㎡미만</td><td>대지면적의 10%이상</td></tr></tbody></table> - 도로의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계가 높은 도로에 우선하여 조경계획을 하여야 한다. - 대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전면공지상에 방음식재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단, 대로에서 진출입이 허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구 분	대지내 조경면적	연면적 2,000㎡ 이상	대지면적의 20%이상	연면적 1,000㎡~2,000㎡미만	대지면적의 15%이상	연면적 1,000㎡미만	대지면적의 10%이상	
구 분	대지내 조경면적										
연면적 2,000㎡ 이상	대지면적의 20%이상										
연면적 1,000㎡~2,000㎡미만	대지면적의 15%이상										
연면적 1,000㎡미만	대지면적의 10%이상										
차량출입 불허구간		-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교차하는 모서리구간 및 모서리로부터 일정거리(5m)내에 출입제어 25m이상 간선도로에 직접 접한 토지의 출입제어 -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지(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로서 도시 계획도로 개설전까지 한시적 맹지적용, 지형단차에 의한 이면부 차량 출입 불가 토지)이거나 의료시설, 주유소, 주차장 및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이 요구되는 시청,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용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 출입제어									
경관		- 옥외광고물의 집단설치가 예상되는 지역 제어 - 옥외 광고물의 설치에 고양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 상기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옥외광고물 표시 기준 지침」을 따름									
친환경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에는 중수도 시스템 또는 우수 재활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장 -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에 투자 또는 계획하여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것을 권장									

■ 변경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지상으로 돌출되는 구조물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보도부속형 전면공지에 차량진출입 및 주차 등을 물리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볼라드 등)의 설치 가능. 또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보도부속형 -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 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서 조성 - 차도부속형 -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와 전면도로의 포장 및 조성방법에 따라서 조성									
대지내 조경		- 자연환경이 양호한 주변과 조화로운 환경을 유지하고 전원적이고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지정<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대지내 조경면적</th></tr></thead><tbody><tr><td>연면적 2,000㎡ 이상</td><td>대지면적의 20%이상</td></tr><tr><td>연면적 1,000㎡~2,000㎡미만</td><td>대지면적의 15%이상</td></tr><tr><td>연면적 1,000㎡미만</td><td>대지면적의 10%이상</td></tr></tbody></table> - 도로의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계가 높은 도로에 우선하여 조경계획을 하여야 한다. - 대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전면공지상에 방음식재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단, 대로에서 진출입이 허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구 분	대지내 조경면적	연면적 2,000㎡ 이상	대지면적의 20%이상	연면적 1,000㎡~2,000㎡미만	대지면적의 15%이상	연면적 1,000㎡미만	대지면적의 10%이상	
구 분	대지내 조경면적										
연면적 2,000㎡ 이상	대지면적의 20%이상										
연면적 1,000㎡~2,000㎡미만	대지면적의 15%이상										
연면적 1,000㎡미만	대지면적의 10%이상										
차량출입 불허구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공통사항)	-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교차하는 모서리구간 및 모서리로부터 일정거리(5m)내에 출입제어 25m이상 간선도로에 직접 접한 토지의 출입제어 -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맹지(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전까지 한시적 맹지적용, 지형단차에 의한 이면부 차량 출입 불가 토지)이거나 의료시설, 주유소, 주차장 및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이 요구되는 시청,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용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 출입제어									
경관		- 옥외광고물의 집단설치가 예상되는 지역 제어 - 옥외 광고물의 설치에 고양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 상기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옥외광고물 표시 기준 지침」을 따름									
친환경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에는 중수도 시스템 또는 우수 재활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장 -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에 투자 또는 계획하여 총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것을 권장									
공공기여 대상부지		- 정의 : ‘공공기여대상부지’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실효되어 폐지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면서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한 지역 - 공공기여대상부지내 필지(국·공유지 제외)는 전체 공동개발(권장)을 원칙으로 하여 부지면적의 15%에 상당하는 공공공지를 조성하여 제공 -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필지의 공동개발(권장)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호 하나 이상의 방식을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 단, 공공기여대상부지내 맹지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개별필지 공공공지 조성 후 제공 -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개설도로 부지 제공 - 비용 납부 - 공공공지는 고양시 유지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면이 1/4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지상에 설치 1개소를 설치하되, 면적은 최소 45㎡이상 - 최소폭은 5m 이상 -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 공공기여대상부지내 국·공유지 제외한 전체 필지를 공동개발한 경우에는 공동개발에 따른 인센티브(용적률 완화)를 부여									

②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 내용(변경)

■ 기정

구 분	완화항목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사항	획지분할/합병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공동개발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필지교환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보차혼용통로/ 보행자우선통로	대지내 공지제공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용도에 관한 사항	권장용도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수용시
경관에 관한 사항	경사지붕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담장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우수재활용시설 설치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빗물저류탱크용량(Ton)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신생에너지 사용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축공사비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건축협정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2	

※ 주 : 1)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 변경

구 분	완화항목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사항	획지분할/합병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공동개발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단, 공공기여대상부지는 전체필지(국·공유지제외) 의 공동개발에 한하여 적용
	필지교환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 보차혼용통로/ 보행자우선통로	대지내 공지제공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용도에 관한 사항	권장용도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수용시
경관에 관한 사항	경사지붕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담장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우수재활용시설 설치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빗물저류탱크용량(Ton)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신생에너지 사용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축공사비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건축협정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2	

※ 주 : 1)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

1 민간부분 시행지침(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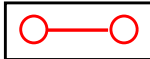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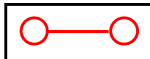
지 침	기 정	변 경																																																																																																																																																																
제1조 (목적)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4조, 제8조 및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9조 내지 제54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의 민간부분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4조, 제8조 및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9조 내지 제54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의 민간부분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적용 지역)	① 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취락 <table><tr><th>도면 번호</th><th>구 역 명</th><th>위 치</th><th>비고</th></tr><tr><td>77</td><td>삼송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삼송동 27-1번지 일대</td><td></td></tr><tr><td>78</td><td>동산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동산동 76-41번지 일대</td><td></td></tr><tr><td>79</td><td>화전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화전동 563-21번지 일대</td><td></td></tr></table> 2. 중규모 취락 <table><tr><th>도면 번호</th><th>구 역 명</th><th>위 치</th><th>비고</th></tr><tr><td>45</td><td>서재동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도내동 760-1번지 일대</td><td></td></tr><tr><td>46</td><td>셋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도내동 589-5번지 일대</td><td></td></tr><tr><td>47</td><td>발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일산동구 산황동 612-1번지 일대</td><td></td></tr><tr><td>48</td><td>신평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신평동 3-184번지 일대</td><td></td></tr><tr><td>49</td><td>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td><td>일산동구 식사동 503-1번지 일대</td><td></td></tr><tr><td>50</td><td>제청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원당동 434-5번지 일대</td><td></td></tr><tr><td>51</td><td>효자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효자동 169-1번지 일대</td><td></td></tr><tr><td>52</td><td>청대골삼말 지구단위계획 구역</td><td>덕양구 원당동 632-1번지 일대</td><td></td></tr><tr><td>53</td><td>두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관산동 471-1번지 일대</td><td></td></tr><tr><td>54</td><td>백신 지구단위계획구역</td><td>일산동구 백석동 1120-30번지 일대</td><td></td></tr><tr><td>55</td><td>베라산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성사동 191-1번지 일대</td><td></td></tr><tr><td>56</td><td>난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현천동 393-1번지 일대</td><td></td></tr><tr><td>57</td><td>양지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현천동 160-5번지 일대</td><td></td></tr><tr><td>58</td><td>가무네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현천동 128번지 일대</td><td></td></tr><tr><td>59</td><td>삼성당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토당동 647-4번지 일대</td><td></td></tr></table>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77	삼송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삼송동 27-1번지 일대		78	동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동산동 76-41번지 일대		79	화전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화전동 563-21번지 일대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45	서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도내동 760-1번지 일대		46	셋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도내동 589-5번지 일대		47	발말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산황동 612-1번지 일대		48	신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신평동 3-184번지 일대		49	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식사동 503-1번지 일대		50	제청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당동 434-5번지 일대		51	효자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효자동 169-1번지 일대		52	청대골삼말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원당동 632-1번지 일대		53	두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관산동 471-1번지 일대		54	백신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백석동 1120-30번지 일대		55	베라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성사동 191-1번지 일대		56	난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현천동 393-1번지 일대		57	양지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현천동 160-5번지 일대		58	가무네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현천동 128번지 일대		59	삼성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토당동 647-4번지 일대		① 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취락 <table><tr><th>도면 번호</th><th>구 역 명</th><th>위 치</th><th>비고</th></tr><tr><td>77</td><td>삼송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삼송동 27-1번지 일대</td><td></td></tr><tr><td>78</td><td>동산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동산동 76-41번지 일대</td><td></td></tr><tr><td>79</td><td>화전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화전동 563-21번지 일대</td><td></td></tr></table> 2. 중규모 취락 <table><tr><th>도면 번호</th><th>구 역 명</th><th>위 치</th><th>비고</th></tr><tr><td>45</td><td>서재동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도내동 760-1번지 일대</td><td></td></tr><tr><td>46</td><td>셋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도내동 589-5번지 일대</td><td></td></tr><tr><td>47</td><td>발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일산동구 산황동 612-1번지 일대</td><td></td></tr><tr><td>48</td><td>신평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신평동 3-184번지 일대</td><td></td></tr><tr><td>49</td><td>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td><td>일산동구 식사동 503-1번지 일대</td><td></td></tr><tr><td>50</td><td>제청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원당동 434-5번지 일대</td><td></td></tr><tr><td>51</td><td>효자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효자동 169-1번지 일대</td><td></td></tr><tr><td>52</td><td>청대골삼말 지구단위계획 구역</td><td>덕양구 원당동 632-1번지 일대</td><td></td></tr><tr><td>53</td><td>두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관산동 471-1번지 일대</td><td></td></tr><tr><td>54</td><td>백신 지구단위계획구역</td><td>일산동구 백석동 1120-30번지 일대</td><td></td></tr><tr><td>55</td><td>베라산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성사동 191-1번지 일대</td><td></td></tr><tr><td>56</td><td>난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현천동 393-1번지 일대</td><td></td></tr><tr><td>57</td><td>양지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현천동 160-5번지 일대</td><td></td></tr><tr><td>58</td><td>가무네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현천동 128번지 일대</td><td></td></tr><tr><td>59</td><td>삼성당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토당동 647-4번지 일대</td><td></td></tr></table>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77	삼송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삼송동 27-1번지 일대		78	동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동산동 76-41번지 일대		79	화전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화전동 563-21번지 일대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45	서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도내동 760-1번지 일대		46	셋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도내동 589-5번지 일대		47	발말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산황동 612-1번지 일대		48	신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신평동 3-184번지 일대		49	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식사동 503-1번지 일대		50	제청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당동 434-5번지 일대		51	효자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효자동 169-1번지 일대		52	청대골삼말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원당동 632-1번지 일대		53	두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관산동 471-1번지 일대		54	백신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백석동 1120-30번지 일대		55	베라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성사동 191-1번지 일대		56	난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현천동 393-1번지 일대		57	양지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현천동 160-5번지 일대		58	가무네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현천동 128번지 일대		59	삼성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토당동 647-4번지 일대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77	삼송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삼송동 27-1번지 일대																																																																																																																																																																
78	동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동산동 76-41번지 일대																																																																																																																																																																
79	화전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화전동 563-21번지 일대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45	서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도내동 760-1번지 일대																																																																																																																																																																
46	셋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도내동 589-5번지 일대																																																																																																																																																																
47	발말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산황동 612-1번지 일대																																																																																																																																																																
48	신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신평동 3-184번지 일대																																																																																																																																																																
49	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식사동 503-1번지 일대																																																																																																																																																																
50	제청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당동 434-5번지 일대																																																																																																																																																																
51	효자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효자동 169-1번지 일대																																																																																																																																																																
52	청대골삼말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원당동 632-1번지 일대																																																																																																																																																																
53	두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관산동 471-1번지 일대																																																																																																																																																																
54	백신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백석동 1120-30번지 일대																																																																																																																																																																
55	베라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성사동 191-1번지 일대																																																																																																																																																																
56	난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현천동 393-1번지 일대																																																																																																																																																																
57	양지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현천동 160-5번지 일대																																																																																																																																																																
58	가무네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현천동 128번지 일대																																																																																																																																																																
59	삼성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토당동 647-4번지 일대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77	삼송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삼송동 27-1번지 일대																																																																																																																																																																
78	동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동산동 76-41번지 일대																																																																																																																																																																
79	화전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화전동 563-21번지 일대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45	서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도내동 760-1번지 일대																																																																																																																																																																
46	셋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도내동 589-5번지 일대																																																																																																																																																																
47	발말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산황동 612-1번지 일대																																																																																																																																																																
48	신평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신평동 3-184번지 일대																																																																																																																																																																
49	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식사동 503-1번지 일대																																																																																																																																																																
50	제청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당동 434-5번지 일대																																																																																																																																																																
51	효자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효자동 169-1번지 일대																																																																																																																																																																
52	청대골삼말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원당동 632-1번지 일대																																																																																																																																																																
53	두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관산동 471-1번지 일대																																																																																																																																																																
54	백신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백석동 1120-30번지 일대																																																																																																																																																																
55	베라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성사동 191-1번지 일대																																																																																																																																																																
56	난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현천동 393-1번지 일대																																																																																																																																																																
57	양지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현천동 160-5번지 일대																																																																																																																																																																
58	가무네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현천동 128번지 일대																																																																																																																																																																
59	삼성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토당동 647-4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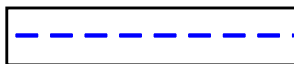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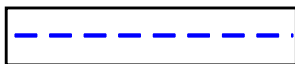
지 침	기 정				변 경																																																																																																																																																																												
<table><tr><th>도면 번호</th><th>구 역 명</th><th>위 치</th><th>비고</th><th>도면 번호</th><th>구 역 명</th><th>위 치</th><th>비고</th></tr><tr><td>61</td><td>상중대장 지구단위계획 구역</td><td>덕양구 대장동 206번지 일대</td><td></td><td>61</td><td>상중대장 지구단위계획 구역</td><td>덕양구 대장동 206번지 일대</td><td></td></tr><tr><td>62</td><td>대덕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덕은동 131-4번지 일대</td><td></td><td>62</td><td>대덕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덕은동 131-4번지 일대</td><td></td></tr><tr><td>64</td><td>소매촌서원촌 지구단위 계획구역</td><td>덕양구 행주외동 195-4번지 일대</td><td></td><td>64</td><td>소매촌서원촌 지구단위 계획구역</td><td>덕양구 행주외동 195-4번지 일대</td><td></td></tr><tr><td>65</td><td>외지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자동 355-10번지 일대</td><td></td><td>65</td><td>외지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자동 355-10번지 일대</td><td></td></tr><tr><td>66</td><td>매화정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강매동 97-1번지 일대</td><td></td><td>66</td><td>매화정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강매동 97-1번지 일대</td><td></td></tr><tr><td>67</td><td>위아래독곶이 지구단위 계획구역</td><td>덕양구 주교동 1108번지 일대</td><td></td><td>67</td><td>위아래독곶이 지구단위 계획구역</td><td>덕양구 주교동 1108번지 일대</td><td></td></tr><tr><td>68</td><td>갈머리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장동 253-4번지 일대</td><td></td><td>68</td><td>갈머리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장동 253-4번지 일대</td><td></td></tr><tr><td>69</td><td>안골뒤꾸지 지구단위계획 구역</td><td>덕양구 내곡동 68-1번지 일대</td><td></td><td>69</td><td>안골뒤꾸지 지구단위계획 구역</td><td>덕양구 내곡동 68-1번지 일대</td><td></td></tr><tr><td>70</td><td>새마을성동 지구단위계획 구역</td><td>덕양구 행주내동 156-4번지 일대</td><td></td><td>70</td><td>새마을성동 지구단위계획 구역</td><td>덕양구 행주내동 156-4번지 일대</td><td></td></tr><tr><td>71</td><td>맨돌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행주내동 497번지 일대</td><td></td><td>71</td><td>맨돌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행주내동 497번지 일대</td><td></td></tr><tr><td>72</td><td>옷말아랫말 지구단위계획 구역</td><td>덕양구 용두동 347-2번지 일대</td><td></td><td>72</td><td>옷말아랫말 지구단위계획 구역</td><td>덕양구 용두동 347-2번지 일대</td><td></td></tr></table>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61	상중대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대장동 206번지 일대		61	상중대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대장동 206번지 일대		62	대덕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덕은동 131-4번지 일대		62	대덕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덕은동 131-4번지 일대		64	소매촌서원촌 지구단위 계획구역	덕양구 행주외동 195-4번지 일대		64	소매촌서원촌 지구단위 계획구역	덕양구 행주외동 195-4번지 일대		65	외지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355-10번지 일대		65	외지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355-10번지 일대		66	매화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강매동 97-1번지 일대		66	매화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강매동 97-1번지 일대		67	위아래독곶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덕양구 주교동 1108번지 일대		67	위아래독곶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덕양구 주교동 1108번지 일대		68	갈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장동 253-4번지 일대		68	갈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장동 253-4번지 일대		69	안골뒤꾸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내곡동 68-1번지 일대		69	안골뒤꾸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내곡동 68-1번지 일대		70	새마을성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행주내동 156-4번지 일대		70	새마을성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행주내동 156-4번지 일대		71	맨돌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행주내동 497번지 일대		71	맨돌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행주내동 497번지 일대		72	옷말아랫말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용두동 347-2번지 일대		72	옷말아랫말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용두동 347-2번지 일대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61	상중대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대장동 206번지 일대		61	상중대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대장동 206번지 일대																																																																																																																																																																											
62	대덕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덕은동 131-4번지 일대		62	대덕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덕은동 131-4번지 일대																																																																																																																																																																											
64	소매촌서원촌 지구단위 계획구역	덕양구 행주외동 195-4번지 일대		64	소매촌서원촌 지구단위 계획구역	덕양구 행주외동 195-4번지 일대																																																																																																																																																																											
65	외지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355-10번지 일대		65	외지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355-10번지 일대																																																																																																																																																																											
66	매화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강매동 97-1번지 일대		66	매화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강매동 97-1번지 일대																																																																																																																																																																											
67	위아래독곶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덕양구 주교동 1108번지 일대		67	위아래독곶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덕양구 주교동 1108번지 일대																																																																																																																																																																											
68	갈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장동 253-4번지 일대		68	갈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장동 253-4번지 일대																																																																																																																																																																											
69	안골뒤꾸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내곡동 68-1번지 일대		69	안골뒤꾸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내곡동 68-1번지 일대																																																																																																																																																																											
70	새마을성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행주내동 156-4번지 일대		70	새마을성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행주내동 156-4번지 일대																																																																																																																																																																											
71	맨돌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행주내동 497번지 일대		71	맨돌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행주내동 497번지 일대																																																																																																																																																																											
72	옷말아랫말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용두동 347-2번지 일대		72	옷말아랫말 지구단위계획 구역	덕양구 용두동 347-2번지 일대																																																																																																																																																																											
3. 소규모 취락																																																																																																																																																																																	
<table><tr><th>도면 번호</th><th>구 역 명</th><th>위 치</th><th>비고</th><th>도면 번호</th><th>구 역 명</th><th>위 치</th><th>비고</th></tr><tr><td>24</td><td>웅달촌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벽제동 219-7번지 일대</td><td></td><td>24</td><td>웅달촌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벽제동 219-7번지 일대</td><td></td></tr><tr><td>25</td><td>빈정동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자동 486-3번지 일대</td><td></td><td>25</td><td>빈정동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자동 486-3번지 일대</td><td></td></tr><tr><td>26</td><td>사리현 지구단위계획구역</td><td>일산동구 사리현동 32-6번지 일대</td><td></td><td>26</td><td>사리현 지구단위계획구역</td><td>일산동구 사리현동 32-6번지 일대</td><td></td></tr><tr><td>27</td><td>월현 지구단위계획구역</td><td>일산동구 사리현동 40번지 일대</td><td></td><td>27</td><td>월현 지구단위계획구역</td><td>일산동구 사리현동 40번지 일대</td><td></td></tr><tr><td>28</td><td>늘봄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자동 69-12번지 일대</td><td></td><td>28</td><td>늘봄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자동 69-12번지 일대</td><td></td></tr><tr><td>29</td><td>용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자동 134-5번지 일대</td><td></td><td>29</td><td>용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자동 134-5번지 일대</td><td></td></tr><tr><td>30</td><td>한오동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자동 283-5번지 일대</td><td></td><td>30</td><td>한오동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자동 283-5번지 일대</td><td></td></tr><tr><td>31</td><td>안터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신원동 261-4번지 일대</td><td></td><td>31</td><td>안터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신원동 261-4번지 일대</td><td></td></tr><tr><td>32</td><td>새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자동 205-27번지 일대</td><td></td><td>32</td><td>새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자동 205-27번지 일대</td><td></td></tr><tr><td>33</td><td>큰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오금동 227-6번지 일대</td><td></td><td>33</td><td>큰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오금동 227-6번지 일대</td><td></td></tr><tr><td>34</td><td>영심동 지구단위계획구역</td><td>일산동구 식사동 549-4번지 일대</td><td></td><td>34</td><td>영심동 지구단위계획구역</td><td>일산동구 식사동 549-4번지 일대</td><td></td></tr><tr><td>35</td><td>박제궁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주교동 443-4번지 일대</td><td></td><td>35</td><td>박제궁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주교동 443-4번지 일대</td><td></td></tr><tr><td>36</td><td>수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성사동 598번지 일대</td><td></td><td>36</td><td>수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성사동 598번지 일대</td><td></td></tr><tr><td>37</td><td>장터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주교동 216-3번지 일대</td><td></td><td>37</td><td>장터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주교동 216-3번지 일대</td><td></td></tr><tr><td>38</td><td>덤불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성사동 29번지 일대</td><td></td><td>38</td><td>덤불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성사동 29번지 일대</td><td></td></tr><tr><td>39</td><td>윗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원흥동 446-1번지 일대</td><td></td><td>39</td><td>윗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원흥동 446-1번지 일대</td><td></td></tr><tr><td>40</td><td>유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원흥동 377-9번지 일대</td><td></td><td>40</td><td>유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원흥동 377-9번지 일대</td><td></td></tr><tr><td>41</td><td>중고개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지축동 403-3번지 일대</td><td></td><td>41</td><td>중고개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지축동 403-3번지 일대</td><td></td></tr><tr><td>42</td><td>절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지축동 167-13번지 일대</td><td></td><td>42</td><td>절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지축동 167-13번지 일대</td><td></td></tr><tr><td>43</td><td>건너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용두동 178번지 일대</td><td></td><td>43</td><td>건너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용두동 178번지 일대</td><td></td></tr></table>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24	웅달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벽제동 219-7번지 일대		24	웅달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벽제동 219-7번지 일대		25	빈정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486-3번지 일대		25	빈정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486-3번지 일대		26	사리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사리현동 32-6번지 일대		26	사리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사리현동 32-6번지 일대		27	월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사리현동 40번지 일대		27	월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사리현동 40번지 일대		28	늘봄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69-12번지 일대		28	늘봄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69-12번지 일대		29	용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134-5번지 일대		29	용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134-5번지 일대		30	한오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283-5번지 일대		30	한오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283-5번지 일대		31	안터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신원동 261-4번지 일대		31	안터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신원동 261-4번지 일대		32	새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205-27번지 일대		32	새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205-27번지 일대		33	큰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오금동 227-6번지 일대		33	큰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오금동 227-6번지 일대		34	영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식사동 549-4번지 일대		34	영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식사동 549-4번지 일대		35	박제궁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주교동 443-4번지 일대		35	박제궁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주교동 443-4번지 일대		36	수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성사동 598번지 일대		36	수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성사동 598번지 일대		37	장터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주교동 216-3번지 일대		37	장터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주교동 216-3번지 일대		38	덤불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성사동 29번지 일대		38	덤불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성사동 29번지 일대		39	윗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흥동 446-1번지 일대		39	윗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흥동 446-1번지 일대		40	유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흥동 377-9번지 일대		40	유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흥동 377-9번지 일대		41	중고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지축동 403-3번지 일대		41	중고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지축동 403-3번지 일대		42	절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지축동 167-13번지 일대		42	절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지축동 167-13번지 일대		43	건너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용두동 178번지 일대		43	건너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용두동 178번지 일대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24	웅달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벽제동 219-7번지 일대		24	웅달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벽제동 219-7번지 일대																																																																																																																																																																											
25	빈정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486-3번지 일대		25	빈정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486-3번지 일대																																																																																																																																																																											
26	사리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사리현동 32-6번지 일대		26	사리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사리현동 32-6번지 일대																																																																																																																																																																											
27	월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사리현동 40번지 일대		27	월현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사리현동 40번지 일대																																																																																																																																																																											
28	늘봄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69-12번지 일대		28	늘봄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69-12번지 일대																																																																																																																																																																											
29	용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134-5번지 일대		29	용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134-5번지 일대																																																																																																																																																																											
30	한오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283-5번지 일대		30	한오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283-5번지 일대																																																																																																																																																																											
31	안터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신원동 261-4번지 일대		31	안터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신원동 261-4번지 일대																																																																																																																																																																											
32	새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205-27번지 일대		32	새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205-27번지 일대																																																																																																																																																																											
33	큰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오금동 227-6번지 일대		33	큰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오금동 227-6번지 일대																																																																																																																																																																											
34	영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식사동 549-4번지 일대		34	영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식사동 549-4번지 일대																																																																																																																																																																											
35	박제궁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주교동 443-4번지 일대		35	박제궁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주교동 443-4번지 일대																																																																																																																																																																											
36	수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성사동 598번지 일대		36	수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성사동 598번지 일대																																																																																																																																																																											
37	장터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주교동 216-3번지 일대		37	장터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주교동 216-3번지 일대																																																																																																																																																																											
38	덤불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성사동 29번지 일대		38	덤불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성사동 29번지 일대																																																																																																																																																																											
39	윗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흥동 446-1번지 일대		39	윗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흥동 446-1번지 일대																																																																																																																																																																											
40	유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흥동 377-9번지 일대		40	유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흥동 377-9번지 일대																																																																																																																																																																											
41	중고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지축동 403-3번지 일대		41	중고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지축동 403-3번지 일대																																																																																																																																																																											
42	절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지축동 167-13번지 일대		42	절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지축동 167-13번지 일대																																																																																																																																																																											
43	건너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용두동 178번지 일대		43	건너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용두동 178번지 일대																																																																																																																																																																											

지 침	기 정	변 경																																																																																								
	4. 신규 10개 취락 <table><tr><th>도면 번호</th><th>구 역 명</th><th>위 치</th><th>비고</th></tr><tr><td>80</td><td>대자1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자동 968-2일원</td><td></td></tr><tr><td>81</td><td>대자2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자동 1017-2일원</td><td></td></tr><tr><td>82</td><td>불당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성사동 337-47일원</td><td></td></tr><tr><td>83</td><td>궁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원흥동 341-2일원</td><td></td></tr><tr><td>84</td><td>한오동2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자동 168-21일원</td><td></td></tr><tr><td>85</td><td>방아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도내동 798-15일원</td><td></td></tr><tr><td>86</td><td>중모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도내동 610-6일원</td><td></td></tr><tr><td>87</td><td>내곡동섬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내곡동 495-10일원</td><td></td></tr><tr><td>88</td><td>서오릉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용두동 432-76일원</td><td></td></tr><tr><td>89</td><td>명지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화정동 694-1일원</td><td></td></tr></table>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80	대자1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968-2일원		81	대자2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1017-2일원		82	불당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성사동 337-47일원		83	궁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흥동 341-2일원		84	한오동2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168-21일원		85	방아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도내동 798-15일원		86	중모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도내동 610-6일원		87	내곡동섬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내곡동 495-10일원		88	서오릉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용두동 432-76일원		89	명지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화정동 694-1일원		4. 신규 10개 취락 <table><tr><th>도면 번호</th><th>구 역 명</th><th>위 치</th><th>비고</th></tr><tr><td>80</td><td>대자1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자동 968-2일원</td><td></td></tr><tr><td>81</td><td>대자2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자동 1017-2일원</td><td></td></tr><tr><td>82</td><td>불당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성사동 337-47일원</td><td></td></tr><tr><td>83</td><td>궁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원흥동 341-2일원</td><td></td></tr><tr><td>84</td><td>한오동2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대자동 168-21일원</td><td></td></tr><tr><td>85</td><td>방아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도내동 798-15일원</td><td></td></tr><tr><td>86</td><td>중모루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도내동 610-6일원</td><td></td></tr><tr><td>87</td><td>내곡동섬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내곡동 495-10일원</td><td></td></tr><tr><td>88</td><td>서오릉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용두동 432-76일원</td><td></td></tr><tr><td>89</td><td>명지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td><td>덕양구 화정동 694-1일원</td><td></td></tr></table>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80	대자1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968-2일원		81	대자2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1017-2일원		82	불당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성사동 337-47일원		83	궁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흥동 341-2일원		84	한오동2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168-21일원		85	방아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도내동 798-15일원		86	중모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도내동 610-6일원		87	내곡동섬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내곡동 495-10일원		88	서오릉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용두동 432-76일원		89	명지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화정동 694-1일원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80	대자1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968-2일원																																																																																								
81	대자2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1017-2일원																																																																																								
82	불당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성사동 337-47일원																																																																																								
83	궁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흥동 341-2일원																																																																																								
84	한오동2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168-21일원																																																																																								
85	방아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도내동 798-15일원																																																																																								
86	중모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도내동 610-6일원																																																																																								
87	내곡동섬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내곡동 495-10일원																																																																																								
88	서오릉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용두동 432-76일원																																																																																								
89	명지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화정동 694-1일원																																																																																								
도면 번호	구 역 명	위 치	비고																																																																																							
80	대자1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968-2일원																																																																																								
81	대자2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1017-2일원																																																																																								
82	불당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성사동 337-47일원																																																																																								
83	궁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원흥동 341-2일원																																																																																								
84	한오동2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대자동 168-21일원																																																																																								
85	방아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도내동 798-15일원																																																																																								
86	중모루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도내동 610-6일원																																																																																								
87	내곡동섬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내곡동 495-10일원																																																																																								
88	서오릉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용두동 432-76일원																																																																																								
89	명지병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양구 화정동 694-1일원																																																																																								
제3조 (시행 지침 적용의 기본원 칙)	① 시행지침의 적용은 지구단위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시 적용한다. 1. 건축물 및 공작물(「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포함)의 신축시 －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외(건축신고 및 허가를 득한 건축물 관련 사용되는 일체의 가설건축물(현장사무실 용도 등)을 말함) 2. 해당부분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② 이 지침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른다. ③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별된다. 이 중 “규제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며, “권장사항”은 권장에 따를 것을 권하여 장려하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킬 것을 권장하는 사항이며 경우에 따라 지침에 정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④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상이할 경우 법규의 범위 안에서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⑤ 대지 상호간 분할합병 또는 공동개발의 해제조정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강화된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본 지침과 지구단위계획결정도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⑦ 지침과 지구단위계획결정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⑧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개정·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따른다.	① 시행지침의 적용은 지구단위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시 적용한다. 1. 건축물 및 공작물(「건축법」 상 가설건축물 포함)의 신축시 －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외(건축신고 및 허가를 득한 건축물 관련 사용되는 일체의 가설건축물(현장사무실 용도 등)을 말함) 2. 해당부분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② 이 지침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른다. ③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별된다. 이 중 “규제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며, “권장사항”은 권장에 따를 것을 권하여 장려하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킬 것을 권장하는 사항이며 경우에 따라 지침에 정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④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상이할 경우 법규의 범위 안에서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⑤ 대지 상호간 분할합병 또는 공동개발의 해제조정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강화된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본 지침과 지구단위계획결정도간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⑦ 지침과 지구단위계획결정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⑧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개정·제정 또는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따른다.																																																																																								

지 침	기 정	변 경
제4조 (용어 의 정의)	제4조(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허용용도”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말한다. 3.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4. “권장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용도를 말한다. 5. “공동개발”이라 함은 인접한 2 이상의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6. “필지교환”이라 함은 토지소유자간 필지의 정형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지의 일부를 인접 필지와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7.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8.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게 하는 선을 말한다. 9. “전면공지”라 함은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획지내 공지를 말한다. 10.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11. “기준용적률”이라 함은 전면도로 폭, 경관, 기타 개발억제 필요성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도시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12. “상한용적률”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는 사항을 준수시에 인센티브로서 추가 제공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에 합산한 용적률을 포함한 용적률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도로 달성할 수 있는 총용적률을 말한다. 13. “보차혼용통로”라 함은 대지안의 보행자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어있는 통로를 말한다. 14. “보행자우선통로”라 함은 대지내에 24시간 개방된 공지로서 차량보다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하게 제공된 통로를 말한다. 1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차량을 제한하고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로를 말한다. 16. “보행자우선도로”라 함은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로를 말한다. 17. “대지분할가능선”이라 함은 개발촉진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필지나 부정형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분할가능 위치를 권장하는 선을 말한다. 18. “블록형 주택용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또는 보차혼용통로로 구획되는 일단의	제4조(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허용용도”라 함은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말한다. 3.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4. “권장용도”라 함은 대상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선정된 용도를 말한다. 5. “공동개발”이라 함은 인접한 2 이상의 대지를 일단의 대지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6. “필지교환”이라 함은 토지소유자간 필지의 정형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지의 일부를 인접 필지와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7.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8.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게 하는 선을 말한다. 9. “전면공지”라 함은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획지내 공지를 말한다. 10.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 11. “기준용적률”이라 함은 전면도로 폭, 경관, 기타 개발억제 필요성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도시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12. “상한용적률”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는 사항을 준수시에 인센티브로서 추가 제공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에 합산한 용적률을 포함한 용적률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도로 달성할 수 있는 총용적률을 말한다. 13. “보차혼용통로”라 함은 대지안의 보행자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되어있는 통로를 말한다. 14. “보행자우선통로”라 함은 대지내에 24시간 개방된 공지로서 차량보다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하게 제공된 통로를 말한다. 1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차량을 제한하고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로를 말한다. 16. “보행자우선도로”라 함은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로를 말한다. 17. “대지분할가능선”이라 함은 개발촉진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필지나 부정형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분할가능 위치를 권장하는 선을 말한다. 18. “블록형 주택용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또는 보차혼용통로로 구획되는 일단의

지 침	기 정	변 경												
	블록에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시행하는 주택사업용지를 말한다. 19. “건축협정”이라 함은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의 전원 합의로 일정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해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협정제도는 GB해제취락 내 건축행위 여건이 불량한 필지(맹지, 과소필지, 부정형필지)에서 보다 활발한 건축행위를 유도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 20. “맞벽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료 :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블록에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시행하는 주택사업용지를 말한다. 19. “건축협정”이라 함은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의 전원 합의로 일정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해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협정제도는 GB해제취락 내 건축행위 여건이 불량한 필지(맹지, 과소필지, 부정형필지)에서 보다 활발한 건축행위를 유도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 20. “맞벽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료 :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21. “공공기여대상부지”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실효되어 폐지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면서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을 말한다.(신설) ②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는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5조 (단위 대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기존의 필지 2. 공동개발이 가능한 일단의 토지 3. 건축협정이 체결된 일단의 토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대지를 단위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기존의 필지 2. 공동개발이 가능한 일단의 토지 3. 건축협정이 체결된 일단의 토지												
제6조 (대지의 최소개발 규모)	① 대지의 최소규모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상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적합한 토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개발사업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을 관계법에 의거 결정·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당해 결정·승인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table border="1" data-bbox="284 1865 821 2000"> <tr> <th>구 분</th><th>면 적 기 준</th><th>비 고</th></tr> <tr> <td>최소개발규모</td><td>60㎡</td><td></td></tr> </table>	구 분	면 적 기 준	비 고	최소개발규모	60㎡		① 대지의 최소규모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단,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상 주택호수 산정기준에 적합한 토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개발사업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을 관계법에 의거 결정·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당해 결정·승인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table border="1" data-bbox="869 1865 1407 2000"> <tr> <th>구 분</th><th>면 적 기 준</th><th>비 고</th></tr> <tr> <td>최소개발규모</td><td>60㎡</td><td></td></tr> </table>	구 분	면 적 기 준	비 고	최소개발규모	60㎡	
구 분	면 적 기 준	비 고												
최소개발규모	60㎡													
구 분	면 적 기 준	비 고												
최소개발규모	60㎡													

지침	기정	변경
제7조 (대지의 최대개발 규모) : 삭제	-	-
제8조 (공동 개발 : 규제사 항)	① 공동개발(규제)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구단위 계획 결정권자가 공동개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60㎡ 이하의 필지중 인접필지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2. 도시계획시설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잔여지 중 인접필지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3.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필지중 인접필지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② 공동개발(규제)이 표시된 필지의 건축물은 인접 필지와 공동으로 건축해야 한다. ③ 도면표시 공동개발(규제) 	① 공동개발(규제)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구단위 계획 결정권자가 공동개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60㎡ 이하의 필지중 인접필지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2. 도시계획시설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잔여지 중 인접필지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3.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필지중 인접필지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② 공동개발(규제)이 표시된 필지의 건축물은 인접 필지와 공동으로 건축해야 한다. ③ 도면표시 공동개발(규제) 
제9조 (공동 개발 : 권장사 항)	① 공동개발(권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권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제8조 ①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인접필지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2. 건축물 대장상 공유토지로서 등재된 토지인 경우 3. 기형적 건축이 예상되는 부정형 필지, 세장비가 큰 필지 또는 삼각형 필지로 필지 여건상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부정형 필지 4. 필지의 면적이 그 입지 위치에 따른 개발잠재력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할 경우 ② 공동개발(권장)이 표시된 필지의 건축물은 인접 필지와 공동으로 건축할 것을 권장하나, 3이상의 필지와 공동개발이 표시된 필지 중 전체적인 공동개발이 안되고 2이상의 필지간 공동개발이 되는 경우에도 공동개발 권장사항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③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필지라도 해당 필지의 소유자가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동개발하도록 권장하며, 공동개발에 따른 인센티브(용적률 완화)를 부여한다. ④ 도면표시 공동개발(권장) 	① 공동개발(권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권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제8조 ①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인접필지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2. 건축물 대장상 공유토지로서 등재된 토지인 경우 3. 기형적 건축이 예상되는 부정형 필지, 세장비가 큰 필지 또는 삼각형 필지로 필지 여건상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부정형 필지 4. 필지의 면적이 그 입지 위치에 따른 개발잠재력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할 경우 5. 제32조 ①항에 해당하는 공공기여대상부지내 필지(신설) ② 공동개발(권장)이 표시된 필지의 건축물은 인접 필지와 공동으로 건축할 것을 권장하나, 3이상의 필지와 공동개발이 표시된 필지 중 전체적인 공동개발이 안되고 2이상의 필지간 공동개발이 되는 경우에도 공동개발 권장사항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③ 공동개발이 지정되지 않은 필지라도 해당 필지의 소유자가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동개발하도록 권장하며, 공동개발에 따른 인센티브(용적률 완화)를 부여한다. ④ 도면표시 공동개발(권장) 

지침	기정	변경								
제10조 (건축협정)	① 건축협정은 「건축법」 제77조의4 ~ 제77조의14를 준용한다. ② 건축협정 시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인센티브(용적률 완화, 조경면적 완화 등)를 부여한다.	① 건축협정은 「건축법」 제77조의4 ~ 제77조의14를 준용한다. ② 건축협정 시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인센티브(용적률 완화, 조경면적 완화 등)를 부여한다.								
제11조 (맞벽건축)	① 맞벽건축은 「건축법」 제59조, 「고양시 건축조례」 제40조를 준용한다.	① 맞벽건축은 「건축법」 제59조, 「고양시 건축조례」 제40조를 준용한다.								
제12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	①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대필지(1,000㎡초과) 내지는 부정형 필지, 도로의 폐쇄에 대한 분할 및 합병을 권장한다. ② 필지의 분할이 가능한 필지규모는 600㎡이상의 필지로 한다. ③ 필지의 분할은 취락내 토지의 부정형에 따른 고른 규모의 획지계획은 한계가 있어 인위적 계획은 지양하며 지침도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단, 오거리 취락의 경우 필지의 분할은 ‘대지분할가능선’을 따라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지분할가능선’의 이동을 허용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의 분할 및 합병이 권장되어 있지 않은 필지라도 토지소유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필지의 분할 및 합병이 가능하다. 단 필지의 분할 및 합병시 모든 필지에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분할가능선 	① 지구단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대필지(1,000㎡초과) 내지는 부정형 필지, 도로의 폐쇄에 대한 분할 및 합병을 권장한다. ② 필지의 분할이 가능한 필지규모는 600㎡이상의 필지로 한다. ③ 필지의 분할은 취락내 토지의 부정형에 따른 고른 규모의 획지계획은 한계가 있어 인위적 계획은 지양하며 지침도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단, 오거리 취락의 경우 필지의 분할은 ‘대지분할가능선’을 따라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지분할가능선’의 이동을 허용한다. ④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의 분할 및 합병이 권장되어 있지 않은 필지라도 토지소유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필지의 분할 및 합병이 가능하다. 단 필지의 분할 및 합병시 모든 필지에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분할가능선 								
제13조 (필지교환)	① 필지교환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토지소유자간 필지의 정형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지의 일부를 인접 필지와 교환할 경우 이를 적극 권장한다.	① 필지교환은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토지소유자간 필지의 정형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지의 일부를 인접 필지와 교환할 경우 이를 적극 권장한다.								
제14조 (허용용도)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건축물 및 시설 등은 입지할 수 없으며,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일지라도 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불허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 ② 허용용도가 표시된 대지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라 다음 용도표에 열거된 건축물 허용용도를 건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 및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를 따른다. ③ 도면표시 허용용도 (규제) <table data-bbox="410 1800 580 1895"><tr><td></td><td>A/B</td></tr><tr><td></td><td></td></tr></table> (A 또는 B 용도 허용)		A/B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에서 제한하는 건축물 및 시설 등은 입지할 수 없으며,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일지라도 본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불허용도는 입지할 수 없다. ② 허용용도가 표시된 대지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라 다음 용도표에 열거된 건축물 허용용도를 건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 및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를 따른다. ③ 도면표시 허용용도 (규제) <table data-bbox="1000 1800 1171 1895"><tr><td></td><td>A/B</td></tr><tr><td></td><td></td></tr></table> (A 또는 B 용도 허용)		A/B		
	A/B									
	A/B									

지 칩

기 정

변 경

□ 제1종전용주거지역(A)

구분	권장용도	허 용 용 도 (A)	불허용도
중규모 5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적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6세대 이하), 다목적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조업소 제외,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단, 연면적 합계 1,000㎡미만)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적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단, 최초 개발 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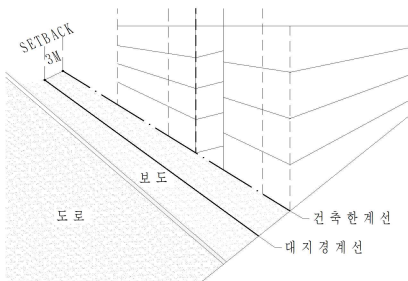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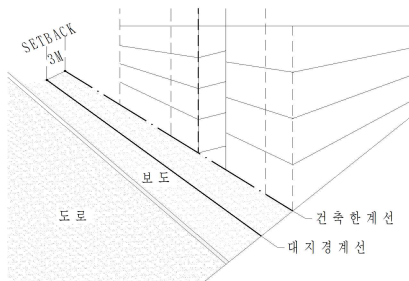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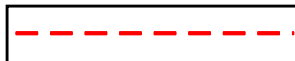
□ 제1종전용주거지역(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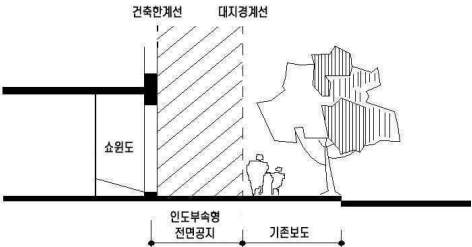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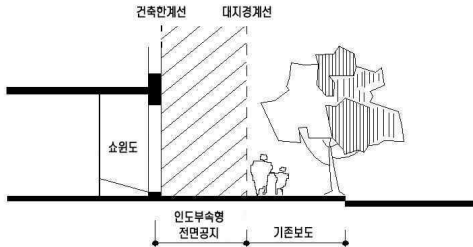
구분	권장용도	허 용 용 도 (A)	불허용도
중규모 5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적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단,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6세대 이하), 다목적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단,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제외)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제조업소 제외,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단, 연면적 합계 1,000㎡미만)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적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단, 최초 개발 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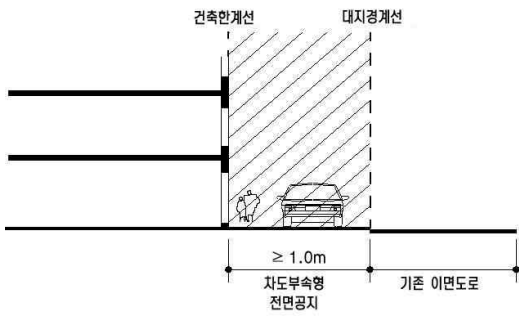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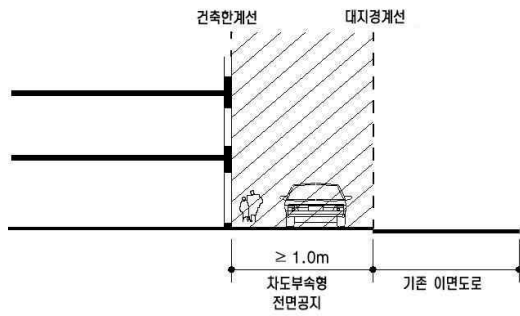
지침	기정		변경																																																																																											
	□ 제1종일반주거지역(B)		□ 제1종일반주거지역(B)																																																																																											
	<table><tr><th>구분</th><th>권장용도</th><th>허용용도(B)</th><th>불허용도</th></tr><tr><td>대규모 77~79</td><td rowspan="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td><td>○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적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td><td rowspan="6">○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td></tr><tr><td>중규모 45~50</td><td>○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6세대 이하), 다목적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td></tr><tr><td>,52~7</td><td>○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td></tr><tr><td>2</td><td>○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 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조업소는 제외,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td></tr><tr><td>소규모 24~43</td><td>○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td></tr><tr><td>신규 80~89</td><td>○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td></tr><tr><td></td><td></td><td>○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td><td></td></tr><tr><td></td><td></td><td>○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중고), 박물관, 도서관 (단, 신규 80~89는 유치원 제외)</td><td></td></tr><tr><td></td><td></td><td>○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적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td><td></td></tr><tr><td></td><td></td><td>○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석유판매소</td><td></td></tr><tr><td></td><td></td><td>○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td><td></td></tr><tr><td></td><td></td><td>○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육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td><td></td></tr><tr><td></td><td></td><td>※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td><td></td></tr></table>	구분	권장용도	허용용도(B)	불허용도	대규모 77~7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적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	중규모 45~50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6세대 이하), 다목적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	,52~7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2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 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조업소는 제외,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	소규모 24~43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신규 80~89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중고), 박물관, 도서관 (단, 신규 80~89는 유치원 제외)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적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석유판매소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육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table><tr><th>구분</th><th>권장용도</th><th>허용용도(B)</th><th>불허용도</th></tr><tr><td>대규모 77~79</td><td rowspan="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td><td>○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적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단,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td><td rowspan="6">○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td></tr><tr><td>중규모 45~50</td><td>○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6세대 이하), 다목적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단,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제외)</td></tr><tr><td>,52~7</td><td>○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td></tr><tr><td>2</td><td>○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 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조업소는 제외,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td></tr><tr><td>소규모 24~43</td><td>○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td></tr><tr><td>신규 80~89</td><td>○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td></tr><tr><td></td><td></td><td>○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td><td></td></tr><tr><td></td><td></td><td>○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중고), 박물관, 도서관 (단, 신규 80~89는 유치원 제외)</td><td></td></tr><tr><td></td><td></td><td>○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적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td><td></td></tr><tr><td></td><td></td><td>○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석유판매소</td><td></td></tr><tr><td></td><td></td><td>○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td><td></td></tr><tr><td></td><td></td><td>○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육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td><td></td></tr><tr><td></td><td></td><td>※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td><td></td></tr></table>	구분	권장용도	허용용도(B)	불허용도	대규모 77~7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적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단,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	중규모 45~50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6세대 이하), 다목적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단,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제외)	,52~7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2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 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조업소는 제외,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	소규모 24~43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신규 80~89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중고), 박물관, 도서관 (단, 신규 80~89는 유치원 제외)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적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석유판매소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육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구분	권장용도	허용용도(B)	불허용도																																																																																											
대규모 77~7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적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																																																																																											
중규모 45~50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6세대 이하), 다목적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																																																																																												
,52~7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2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 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조업소는 제외,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																																																																																												
소규모 24~43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신규 80~89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중고), 박물관, 도서관 (단, 신규 80~89는 유치원 제외)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적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석유판매소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육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구분	권장용도	허용용도(B)	불허용도																																																																																											
대규모 77~7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적 다가구주택은 6가구 이하(단,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가구주택은 3가구 이하)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																																																																																											
중규모 45~50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6세대 이하), 다목적 연립주택(동당 6세대 이하)(단, 공공기여대상부지 내에서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제외)																																																																																												
,52~7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2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 골프연습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제조업소는 제외,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 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																																																																																												
소규모 24~43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신규 80~89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제외)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중고), 박물관, 도서관 (단, 신규 80~89는 유치원 제외)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나목 노인복지시설, 다목적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함)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석유판매소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목 세차장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육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지침	기정	변경																																
	□ 자연녹지지역(C) <table><tr><th>구분</th><th>권장용도</th><th>허용용도</th><th>불허용도</th></tr><tr><td rowspan="2">중규모 62 신규 80~89</td><td rowspan="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td><td>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은 3가구이하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골프연습장, 장의사, 충포관매사, 제조업소는 제외,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및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중고), 박물관, 도서관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석유판매소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뭇 세차장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육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td><td>○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td></tr></table> ④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보상(용적율인센티브)을 받 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당해 지구단위계획 에서 계획한 권장용도 범위내서만 이루어져야 한 다.	구분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중규모 62 신규 80~8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은 3가구이하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골프연습장, 장의사, 충포관매사, 제조업소는 제외,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및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중고), 박물관, 도서관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석유판매소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뭇 세차장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육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	□ 자연녹지지역(C) <table><tr><th>구분</th><th>권장용도</th><th>허용용도</th><th>불허용도</th></tr><tr><td rowspan="2">중규모 62 신규 80~89</td><td rowspan="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td><td>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은 3가구이하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골프연습장, 장의사, 충포관매사, 제조업소는 제외,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및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중고), 박물관, 도서관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석유판매소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뭇 세차장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육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td><td>○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td></tr></table> ④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보상(용적율인센티브)을 받 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당해 지구단위계획 에서 계획한 권장용도 범위내서만 이루어져야 한 다.	구분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중규모 62 신규 80~8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은 3가구이하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골프연습장, 장의사, 충포관매사, 제조업소는 제외,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및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중고), 박물관, 도서관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석유판매소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뭇 세차장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육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																
구분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중규모 62 신규 80~8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은 3가구이하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골프연습장, 장의사, 충포관매사, 제조업소는 제외,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및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중고), 박물관, 도서관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석유판매소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뭇 세차장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육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																															
		구분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중규모 62 신규 80~8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다목 다가구주택은 3가구이하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옥외골프연습장, 장의사, 충포관매사, 제조업소는 제외, 단 최초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일 이전 제조업소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은 허용)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및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중고), 박물관, 도서관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가목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 석유판매소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 주차장 및 나뭇 세차장 ○별표1 제21호 동물및식물관련시설 중 사육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지하층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허용용도 이외의 모든 용도																															
		제15조 (건폐율)	① 건폐율은 다음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table><tr><th>구분</th><th>건폐율</th><th>비고</th></tr><tr><td>제1종전용주거지역</td><td>50% 이하</td><td></td></tr><tr><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60% 이하</td><td></td></tr><tr><td>자연녹지지역</td><td>20% 이하</td><td></td></tr></table> ② 도면표시방법 : 건축물의 건폐율은 아래표시 그림 의 좌측하단에 명기한다. 예 : <table><tr><td></td><td></td></tr><tr><td>60</td><td></td></tr></table> → 건축물의 건폐율	구분	건폐율	비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60		① 건폐율은 다음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table><tr><th>구분</th><th>건폐율</th><th>비고</th></tr><tr><td>제1종전용주거지역</td><td>50% 이하</td><td></td></tr><tr><td>제1종일반주거지역</td><td>60% 이하</td><td></td></tr><tr><td>자연녹지지역</td><td>20% 이하</td><td></td></tr></table> ② 도면표시방법 : 건축물의 건폐율은 아래표시 그림 의 좌측하단에 명기한다. 예 : <table><tr><td></td><td></td></tr><tr><td>60</td><td></td></tr></table> → 건축물의 건폐율	구분	건폐율	비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구분	건폐율	비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60																																		
구분	건폐율	비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60																																		

지침	기정	변경																																																
제16조 (용적률)	① 용적률은 다음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용적률</th><th>비고</th></tr><tr><td colspan="2">제1종전용주거지역</td><td>100 % 이하</td><td></td></tr><tr><td rowspan="2">제1종일반 주거지역</td><td>대규모 취락</td><td>기준 : 150 % 이하 상한 : 180 % 이하</td><td rowspan="2"></td></tr><tr><td>중/소규모/ 10개 취락</td><td>기준 : 140 % 이하 상한 : 170 % 이하</td></tr><tr><td>자연녹지지역</td><td>10개취락</td><td>100% 이하</td><td></td></tr></table> ② 도면표시방법 : 건축물의 용적률은 아래표시 그림의 좌측상단에 명기한다. 예 : <table><tr><td>150</td><td></td></tr><tr><td>180</td><td></td></tr><tr><td></td><td></td></tr></table> → 건축물의 용적률	구분		용적률	비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 이하		제1종일반 주거지역	대규모 취락	기준 : 150 % 이하 상한 : 180 % 이하		중/소규모/ 10개 취락	기준 : 140 % 이하 상한 : 170 % 이하	자연녹지지역	10개취락	100% 이하		150		180				① 용적률은 다음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table><tr><th colspan="2">구분</th><th>용적률</th><th>비고</th></tr><tr><td colspan="2">제1종전용주거지역</td><td>100 % 이하</td><td></td></tr><tr><td rowspan="2">제1종일반 주거지역</td><td>대규모 취락</td><td>기준 : 150 % 이하 상한 : 180 % 이하</td><td rowspan="2"></td></tr><tr><td>중/소규모/ 10개 취락</td><td>기준 : 140 % 이하 상한 : 170 % 이하</td></tr><tr><td>자연녹지지역</td><td>10개취락</td><td>100% 이하</td><td></td></tr></table> ② 도면표시방법 : 건축물의 용적률은 아래표시 그림의 좌측상단에 명기한다. 예 : <table><tr><td>150</td><td></td></tr><tr><td>180</td><td></td></tr><tr><td></td><td></td></tr></table> → 건축물의 용적률	구분		용적률	비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 이하		제1종일반 주거지역	대규모 취락	기준 : 150 % 이하 상한 : 180 % 이하		중/소규모/ 10개 취락	기준 : 140 % 이하 상한 : 170 % 이하	자연녹지지역	10개취락	100% 이하		150		180			
	구분		용적률	비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 이하																																																
제1종일반 주거지역	대규모 취락	기준 : 150 % 이하 상한 : 180 % 이하																																																
	중/소규모/ 10개 취락	기준 : 140 % 이하 상한 : 170 % 이하																																																
자연녹지지역	10개취락	100% 이하																																																
150																																																		
180																																																		
구분		용적률	비고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 이하																																																
제1종일반 주거지역	대규모 취락	기준 : 150 % 이하 상한 : 180 % 이하																																																
	중/소규모/ 10개 취락	기준 : 140 % 이하 상한 : 170 % 이하																																																
자연녹지지역	10개취락	100% 이하																																																
150																																																		
180																																																		
제17조 (건축물의 높이)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의하여 건축물높이가 지정된 대지에서는 지정된 높이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높이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고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table><tr><th>구분</th><th>최고높이계획</th></tr><tr><td>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td><td>3층 이하(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4층까지 허용) ※ 노외 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입지시 3층이하</td></tr></table> ③ 도면표시방법 : 건축물의 높이규제는 층수 및 높이로 규제하며, 아래표시 그림의 우측하단에 명기한다. 예 : <table><tr><td></td><td></td></tr><tr><td></td><td>3층</td></tr></table> → 건축물의 층수 ④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구분	최고높이계획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3층 이하(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4층까지 허용) ※ 노외 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입지시 3층이하				3층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의하여 건축물높이가 지정된 대지에서는 지정된 높이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높이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최고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table><tr><th>구분</th><th>최고높이계획</th></tr><tr><td>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td><td>3층 이하(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4층까지 허용) ※ 노외 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입지시 3층이하</td></tr></table> ③ 도면표시방법 : 건축물의 높이규제는 층수 및 높이로 규제하며, 아래표시 그림의 우측하단에 명기한다. 예 : <table><tr><td></td><td></td></tr><tr><td></td><td>3층</td></tr></table> → 건축물의 층수 ④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구분	최고높이계획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3층 이하(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4층까지 허용) ※ 노외 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입지시 3층이하				3층																																
	구분	최고높이계획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3층 이하(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4층까지 허용) ※ 노외 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입지시 3층이하																																																	
	3층																																																	
구분	최고높이계획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3층 이하(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4층까지 허용) ※ 노외 주차장내 주차전용 건축물 입지시 3층이하																																																	
	3층																																																	
제18조 (건축)	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물 벽면이 돌출되어서는 안	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 건축물 벽면이 돌출되어서는 안																																																

지침	기정	변경																																				
한계선의 의 적용)	된다. ②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지상으로 돌출되는 구조물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와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도로에 적용되는 건축한계선은 도로의 중심선 및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양측으로 동일하게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 및 대지의 지적경계선이 과도하게 불규칙하여 통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 계획되어진 건축한계선의 선형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축한계선의 폭원을 적용할 수 있다.  <table border="1"><thead><tr><th colspan="2">구분</th><th>적용 기준</th><th>비고</th></tr></thead><tbody><tr><td rowspan="2">대규모 취락</td><td>8m이하 도로변</td><td>경계선으로부터 1.5m</td><td></td></tr><tr><td>8m초과 도로변</td><td>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td><td></td></tr><tr><td rowspan="2">중/소규모/ 신규10개 취락</td><td>6m이하 도로변</td><td>경계선으로부터 1.5m</td><td></td></tr><tr><td>6m초과 도로변</td><td>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td><td></td></tr></tbody></table> ⑤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의 폭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대지라도 건축법 및 관련지침을 따라야한다. ⑥ 도면표시 건축한계선(규제) 	구분		적용 기준	비고	대규모 취락	8m이하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5m		8m초과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중/소규모/ 신규10개 취락	6m이하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5m		6m초과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된다. ②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지상으로 돌출되는 구조물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하는 보행 및 차량을 위한 통로와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도로에 적용되는 건축한계선은 도로의 중심선 및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양측으로 동일하게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 및 대지의 지적경계선이 과도하게 불규칙하여 통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 계획되어진 건축한계선의 선형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축한계선의 폭원을 적용할 수 있다.  <table border="1"><thead><tr><th colspan="2">구분</th><th>적용 기준</th><th>비고</th></tr></thead><tbody><tr><td rowspan="2">대규모 취락</td><td>8m이하 도로변</td><td>경계선으로부터 1.5m</td><td></td></tr><tr><td>8m초과 도로변</td><td>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td><td></td></tr><tr><td rowspan="2">중/소규모/ 신규10개 취락</td><td>6m이하 도로변</td><td>경계선으로부터 1.5m</td><td></td></tr><tr><td>6m초과 도로변</td><td>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td><td></td></tr></tbody></table> ⑤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의 폭원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정되지 않은 대지라도 건축법 및 관련지침을 따라야한다. ⑥ 도면표시 건축한계선(규제) 	구분		적용 기준	비고	대규모 취락	8m이하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5m		8m초과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중/소규모/ 신규10개 취락	6m이하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5m		6m초과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구분		적용 기준	비고																																		
대규모 취락	8m이하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5m																																				
	8m초과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중/소규모/ 신규10개 취락	6m이하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5m																																				
	6m초과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구분		적용 기준	비고																																			
대규모 취락	8m이하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5m																																				
	8m초과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중/소규모/ 신규10개 취락	6m이하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5m																																				
	6m초과 도로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제19조 (건축물의 형태)	① 건축물의 형태는 자연친화적이고 지역여건에 맞는 형태로 하고 재료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① 건축물의 형태는 자연친화적이고 지역여건에 맞는 형태로 하고 재료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지침	기정	변경
	② 중고개, 절골취락의 경우 옹벽설치에 따른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형순응형 건축물을 배치를 권장한다. ③ 『건축법』 및 『고양시 건축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표> 구릉지 지형순응형 건축물 배치 예시 	② 중고개, 절골취락의 경우 옹벽설치에 따른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형순응형 건축물을 배치를 권장한다. ③ 『건축법』 및 『고양시 건축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표> 구릉지 지형순응형 건축물 배치 예시 
제20조 (전면 공지의 조성방 식)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도 및 차도와 접하는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길이 이상을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대지내 공지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지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의 공지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지상으로 돌출되는 구조물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보도부속형 전면공지에 차량진출입 및 주차 등을 물리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볼라드 등)의 설치 가능하다. 또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전면공지(보도부속형)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전면공지(차도부속형)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보도 및 차도와 접하는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길이 이상을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대지내 공지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지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의 공지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지상으로 돌출되는 구조물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단, 보도부속형 전면공지에 차량진출입 및 주차 등을 물리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볼라드 등)의 설치 가능하다. 또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전면공지(보도부속형) 보도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면보도의 조성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전면공지에 의한 보도 확폭은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전면공지(차도부속형)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와 접하는 필지의 건축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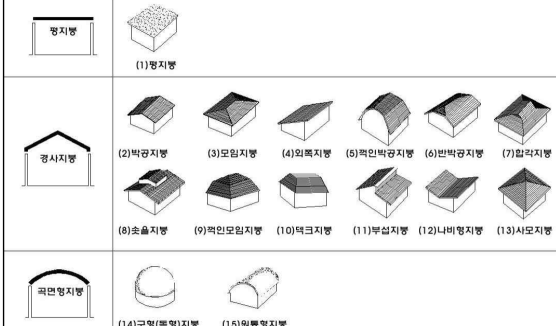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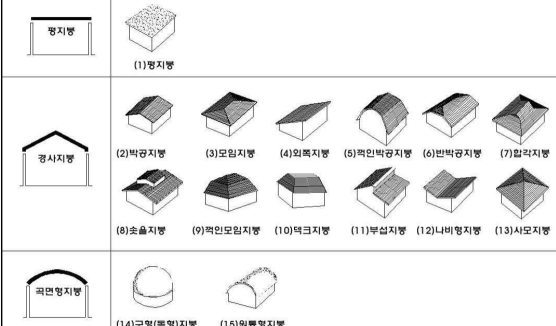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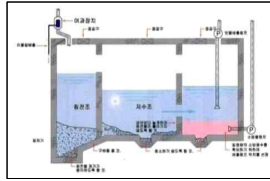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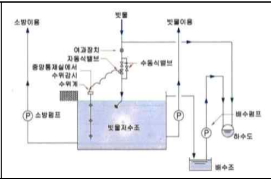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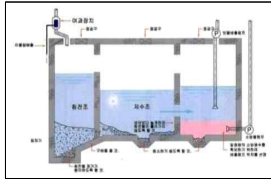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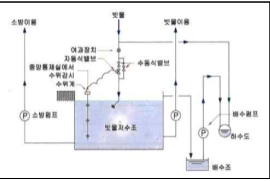
지침	기정	변경
	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와 전면도로의 포장 및 조성방법에 따라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타사항 1. 단차리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대지내 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이가 없어야 한다. 2. 포장 : 공공부분과 가급적 동일한 포장 재질·패턴을 사용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한다. 3. 보도와 전면공지(보도부속형) 경계부 처리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공지와 보도와의 경계부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경계석을 설치한다. 4. 적용의 예외 :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위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와 전면도로의 포장 및 조성방법에 따라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타사항 1. 단차리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의해 생기는 대지내 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차이가 없어야 한다. 2. 포장 : 공공부분과 가급적 동일한 포장 재질·패턴을 사용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한다. 3. 보도와 전면공지(보도부속형) 경계부 처리 :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한계선에 의해 조성되는 공지와 보도와의 경계부는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도경계석을 설치한다. 4. 적용의 예외 :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위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보차혼용통로)	① 보차혼용통로는 건축한계선을 통하여 확보하며, 건축법상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한다. ② 보차혼용통로는 보행 또는 차량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확보한다. 1. 통로에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인접 대지간 단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통로에는 지하층, 광고물, 정화조,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지상으로 돌출되는 구조물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3. 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	① 보차혼용통로는 건축한계선을 통하여 확보하며, 건축법상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한다. ② 보차혼용통로는 보행 또는 차량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확보한다. 1. 통로에 접하는 보도 혹은 도로와 단차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인접 대지간 단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통로에는 지하층, 광고물, 정화조,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지상으로 돌출되는 구조물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3. 통로로 연결되는 양측도로의 고저차가 있을 경우

지침	기정	변경																								
	경사로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차혼용통로는 본 지구단위계획 공공부문 관련 조항 기준에 적합한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하며, 대지내 통로의 포장은 공공부문 시행 지침 포장기준에 의한 조성방식을 따른다. ④ 다음 각호의 경우 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관계 기관협의 및 심의없이 변경(폐지포함)할 수 있으며, 보차혼용통로의 변경시 이에 따른 건축한계선도 동시에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력개발 및 공동개발 등을 통해 블록내부의 맹지가 해소될 경우 2. 맹지해소를 위한 다른 대체통로의 확보 등 대안이 있을 경우 ⑤ 보차혼용통로 조성시 대지 분할 및 지목변경을 권장하며, 이 경우 획지 분할에 대한 완화항목과 보차혼용통로 제공에 따른 완화항목 양쪽의 인센티브를 동시에 적용 받고, 밀도(건폐율, 용적률) 산정시 보차혼용통로로 제공한 면적을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⑥ 보차혼용통로의 조성은 각각의 건축이 행해지는 시점에 민간(건축주)이 조성한다. ⑦ 도면표시 보차혼용통로(규제)  < 표 > 보차혼용통로 예시 <table><tr><th>구분</th><th>보차혼용통로 폐지</th><th>보차혼용통로 위치변경</th><th>사도 개설</th></tr><tr><td>유형 예시</td><td></td><td></td><td></td></tr><tr><td>특성</td><td>○ 공동개발을 통해 블록내부의 맹지 해소</td><td>○ 보차혼용통로 및 그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위치 변경</td><td>○ 사도개설을 하더라도 기존 보차혼용통로의 기능유지가 필요한 경우 보차혼용통로 유지</td></tr></table>	구분	보차혼용통로 폐지	보차혼용통로 위치변경	사도 개설	유형 예시				특성	○ 공동개발을 통해 블록내부의 맹지 해소	○ 보차혼용통로 및 그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위치 변경	○ 사도개설을 하더라도 기존 보차혼용통로의 기능유지가 필요한 경우 보차혼용통로 유지	경사로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차혼용통로는 본 지구단위계획 공공부문 관련 조항 기준에 적합한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하며, 대지내 통로의 포장은 공공부문 시행 지침 포장기준에 의한 조성방식을 따른다. ④ 다음 각호의 경우 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관계 기관협의 및 심의없이 변경(폐지포함)할 수 있으며, 보차혼용통로의 변경시 이에 따른 건축한계선도 동시에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력개발 및 공동개발 등을 통해 블록내부의 맹지가 해소될 경우 2. 맹지해소를 위한 다른 대체통로의 확보 등 대안이 있을 경우 ⑤ 보차혼용통로 조성시 대지 분할 및 지목변경을 권장하며, 이 경우 획지 분할에 대한 완화항목과 보차혼용통로 제공에 따른 완화항목 양쪽의 인센티브를 동시에 적용 받고, 밀도(건폐율, 용적률) 산정시 보차혼용통로로 제공한 면적을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⑥ 보차혼용통로의 조성은 각각의 건축이 행해지는 시점에 민간(건축주)이 조성한다. ⑦ 도면표시 보차혼용통로(규제)  < 표 > 보차혼용통로 예시 <table><tr><th>구분</th><th>보차혼용통로 폐지</th><th>보차혼용통로 위치변경</th><th>사도 개설</th></tr><tr><td>유형 예시</td><td></td><td></td><td></td></tr><tr><td>특성</td><td>○ 공동개발을 통해 블록내부의 맹지 해소</td><td>○ 보차혼용통로 및 그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위치 변경</td><td>○ 사도개설을 하더라도 기존 보차혼용통로의 기능유지가 필요한 경우 보차혼용통로 유지</td></tr></table>	구분	보차혼용통로 폐지	보차혼용통로 위치변경	사도 개설	유형 예시				특성	○ 공동개발을 통해 블록내부의 맹지 해소	○ 보차혼용통로 및 그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위치 변경	○ 사도개설을 하더라도 기존 보차혼용통로의 기능유지가 필요한 경우 보차혼용통로 유지
구분	보차혼용통로 폐지	보차혼용통로 위치변경	사도 개설																							
유형 예시																										
특성	○ 공동개발을 통해 블록내부의 맹지 해소	○ 보차혼용통로 및 그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위치 변경	○ 사도개설을 하더라도 기존 보차혼용통로의 기능유지가 필요한 경우 보차혼용통로 유지																							
구분	보차혼용통로 폐지	보차혼용통로 위치변경	사도 개설																							
유형 예시																										
특성	○ 공동개발을 통해 블록내부의 맹지 해소	○ 보차혼용통로 및 그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위치 변경	○ 사도개설을 하더라도 기존 보차혼용통로의 기능유지가 필요한 경우 보차혼용통로 유지																							
제22조 (보행자우선통로)	① 보행자우선통로는 건축한계선을 통하여 확보하며, 건축법상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한다. ② 보행자우선통로는 보행 또는 차량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상기 제19조 ②항 각호에 적합하게	① 보행자우선통로는 건축한계선을 통하여 확보하며, 건축법상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및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한다. ② 보행자우선통로는 보행 또는 차량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상기 제19조 ②항 각호에 적합하게																								

지침	기정	변경																				
	확보한다. ③ 보행자우선통로로 확보된 공지는 내구성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기준은 공공부문의 “보행자우선통로” 조성방식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경우 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협의 및 심의없이 변경(폐지포함)할 수 있으며, 보행자우선통로의 변경시 이에 따른 건축한계선도 동시에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력개발 및 공동개발 등을 통해 블록내부의 맹지가 해소될 경우 2. 맹지해소를 위한 다른 대체통로의 확보 등 대안이 있을 경우 ⑤ 보행자우선통로 조성시 대지 분할 및 지목변경을 권장하며, 이 경우 획지 분할에 대한 완화항목과 보행자우선통로 제공에 따른 완화항목 양쪽의 인센티브를 동시에 적용하고, 밀도(건폐율, 용적률) 산정시 보행자우선통로로 제공한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한다. ⑥ 보행자우선통로의 조성은 각각의 건축이 행해지는 시점에 민간(건축주)이 조성한다. ⑦ 도면표시 보차혼용통로(규제) 	확보한다. ③ 보행자우선통로로 확보된 공지는 내구성있는 재료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기준은 공공부문의 “보행자우선통로” 조성방식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경우 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협의 및 심의없이 변경(폐지포함)할 수 있으며, 보행자우선통로의 변경시 이에 따른 건축한계선도 동시에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력개발 및 공동개발 등을 통해 블록내부의 맹지가 해소될 경우 2. 맹지해소를 위한 다른 대체통로의 확보 등 대안이 있을 경우 ⑤ 보행자우선통로 조성시 대지 분할 및 지목변경을 권장하며, 이 경우 획지 분할에 대한 완화항목과 보행자우선통로 제공에 따른 완화항목 양쪽의 인센티브를 동시에 적용하고, 밀도(건폐율, 용적률) 산정시 보행자우선통로로 제공한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한다. ⑥ 보행자우선통로의 조성은 각각의 건축이 행해지는 시점에 민간(건축주)이 조성한다. ⑦ 도면표시 보차혼용통로(규제) 																				
제23조 (대지내 조경에 관한 사항)	① 자연환경이 양호한 주변과 조화로운 환경을 유지하고 전원적이고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한 대지내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대지내 조경면적</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연면적 2,000㎡ 이상</td><td>대지면적의 20%이상</td><td rowspan="3"></td></tr> <tr> <td>연면적 1,000㎡~2,000㎡미만</td><td>대지면적의 15%이상</td></tr> <tr> <td>연면적 1,000㎡미만</td><td>대지면적의 10%이상</td></tr> </tbody> </table> ② 도로의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계가 높은 도로에 우선하여 조경계획을 권장한다. ③ 대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전면공지상에 방음식재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단, 대로이상 도로변에서 진출입이 허용된 구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④ 건축법 제42조, 고양시 건축조례 제33조에 따라 대지면적 200㎡미만은 대지내 조경면적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구분	대지내 조경면적	비고	연면적 2,000㎡ 이상	대지면적의 20%이상		연면적 1,000㎡~2,000㎡미만	대지면적의 15%이상	연면적 1,000㎡미만	대지면적의 10%이상	① 자연환경이 양호한 주변과 조화로운 환경을 유지하고 전원적이고 쾌적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한 대지내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대지내 조경면적</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연면적 2,000㎡ 이상</td><td>대지면적의 20%이상</td><td rowspan="3"></td></tr> <tr> <td>연면적 1,000㎡~2,000㎡미만</td><td>대지면적의 15%이상</td></tr> <tr> <td>연면적 1,000㎡미만</td><td>대지면적의 10%이상</td></tr> </tbody> </table> ② 도로의 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계가 높은 도로에 우선하여 조경계획을 권장한다. ③ 대로이상 도로변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전면공지상에 방음식재 또는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단, 대로이상 도로변에서 진출입이 허용된 구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④ 건축법 제42조, 고양시 건축조례 제33조에 따라 대지면적 200㎡미만은 대지내 조경면적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구분	대지내 조경면적	비고	연면적 2,000㎡ 이상	대지면적의 20%이상		연면적 1,000㎡~2,000㎡미만	대지면적의 15%이상	연면적 1,000㎡미만	대지면적의 10%이상
구분	대지내 조경면적	비고																				
연면적 2,000㎡ 이상	대지면적의 20%이상																					
연면적 1,000㎡~2,000㎡미만	대지면적의 15%이상																					
연면적 1,000㎡미만	대지면적의 10%이상																					
구분	대지내 조경면적	비고																				
연면적 2,000㎡ 이상	대지면적의 20%이상																					
연면적 1,000㎡~2,000㎡미만	대지면적의 15%이상																					
연면적 1,000㎡미만	대지면적의 10%이상																					

지침	기정	변경																								
	⑤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에 따라 대지의 조경 면적을 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에 따라 대지의 조경 면적을 2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 (담장의 설치)	①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구간의 대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가능한 한 미설치, 식재담장(생울타리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한다. ② 담장 설치시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로 권장한다. < 표 > 담장, 생울타리, 대문예시 <table><tr><th>구분</th><th>담 장</th><th>생 울 타 리</th><th>대 문</th></tr><tr><td>유형 예시</td><td></td><td></td><td></td></tr><tr><td>특 성</td><td> ○ 개방된 가로공간 조성 ○ open 공간으로서 가로의 밀폐감 감소 </td><td> ○ 지역 생태환경에 기여 </td><td> ○ 개방된 가로공간 조성 ○ 가로의 안전성 제고 </td></tr></table>	구분	담 장	생 울 타 리	대 문	유형 예시				특 성	○ 개방된 가로공간 조성 ○ open 공간으로서 가로의 밀폐감 감소	○ 지역 생태환경에 기여	○ 개방된 가로공간 조성 ○ 가로의 안전성 제고	①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구간의 대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가능한 한 미설치, 식재담장(생울타리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한다. ② 담장 설치시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로 권장한다. < 표 > 담장, 생울타리, 대문예시 <table><tr><th>구분</th><th>담 장</th><th>생 울 타 리</th><th>대 문</th></tr><tr><td>유형 예시</td><td></td><td></td><td></td></tr><tr><td>특 성</td><td> ○ 개방된 가로공간 조성 ○ open 공간으로서 가로의 밀폐감 감소 </td><td> ○ 지역 생태환경에 기여 </td><td> ○ 개방된 가로공간 조성 ○ 가로의 안전성 제고 </td></tr></table>	구분	담 장	생 울 타 리	대 문	유형 예시				특 성	○ 개방된 가로공간 조성 ○ open 공간으로서 가로의 밀폐감 감소	○ 지역 생태환경에 기여	○ 개방된 가로공간 조성 ○ 가로의 안전성 제고
구분	담 장	생 울 타 리	대 문																							
유형 예시																										
특 성	○ 개방된 가로공간 조성 ○ open 공간으로서 가로의 밀폐감 감소	○ 지역 생태환경에 기여	○ 개방된 가로공간 조성 ○ 가로의 안전성 제고																							
구분	담 장	생 울 타 리	대 문																							
유형 예시																										
특 성	○ 개방된 가로공간 조성 ○ open 공간으로서 가로의 밀폐감 감소	○ 지역 생태환경에 기여	○ 개방된 가로공간 조성 ○ 가로의 안전성 제고																							
제25조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적용 : 규제사항)	① 다음 사항의 경우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table><tr><th>적 용 대 상</th><th>비 고</th></tr><tr><td>○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교차하는 모서리 구간 및 모서리로부터 일정거리(5m이상)내에서 출입제어</td><td></td></tr><tr><td>○ 25m이상 간선도로에 직접 접한 토지의 출입제어 -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및 보차혼용통로에 접한 토지에서 도시계획도로(보차혼용통로) 개설이 되기 전까지 한시적 맹지인 경우, 지형·대지여건 상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시설, 주유소, 주차장 및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이 요구되는 시청,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용 ※한시적 맹지 적용하여 차량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토지에 접한 도시계획도로(보차혼용통로)의 개설(확보)시까지 차량출입이 한시적인 사항임을 명시한다.</td><td></td></tr><tr><td>○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10m이내</td><td></td></tr></table> ②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의 출입이 허용되어야 할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면표시 차량출입불허구간 	적 용 대 상	비 고	○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교차하는 모서리 구간 및 모서리로부터 일정거리(5m이상)내에서 출입제어		○ 25m이상 간선도로에 직접 접한 토지의 출입제어 -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및 보차혼용통로에 접한 토지에서 도시계획도로(보차혼용통로) 개설이 되기 전까지 한시적 맹지인 경우, 지형·대지여건 상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시설, 주유소, 주차장 및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이 요구되는 시청,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용 ※한시적 맹지 적용하여 차량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토지에 접한 도시계획도로(보차혼용통로)의 개설(확보)시까지 차량출입이 한시적인 사항임을 명시한다.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10m이내		① 다음 사항의 경우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table><tr><th>적 용 대 상</th><th>비 고</th></tr><tr><td>○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교차하는 모서리 구간 및 모서리로부터 일정거리(5m이상)내에서 출입제어</td><td></td></tr><tr><td>○ 25m이상 간선도로에 직접 접한 토지의 출입제어 -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및 보차혼용통로에 접한 토지에서 도시계획도로(보차혼용통로) 개설이 되기 전까지 한시적 맹지인 경우, 지형·대지여건 상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시설, 주유소, 주차장 및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이 요구되는 시청,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용 ※한시적 맹지 적용하여 차량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토지에 접한 도시계획도로(보차혼용통로)의 개설(확보)시까지 차량출입이 한시적인 사항임을 명시한다.</td><td></td></tr><tr><td>○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10m이내</td><td></td></tr></table> ②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의 출입이 허용되어야 할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도면표시 차량출입불허구간 	적 용 대 상	비 고	○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교차하는 모서리 구간 및 모서리로부터 일정거리(5m이상)내에서 출입제어		○ 25m이상 간선도로에 직접 접한 토지의 출입제어 -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및 보차혼용통로에 접한 토지에서 도시계획도로(보차혼용통로) 개설이 되기 전까지 한시적 맹지인 경우, 지형·대지여건 상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시설, 주유소, 주차장 및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이 요구되는 시청,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용 ※한시적 맹지 적용하여 차량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토지에 접한 도시계획도로(보차혼용통로)의 개설(확보)시까지 차량출입이 한시적인 사항임을 명시한다.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10m이내									
적 용 대 상	비 고																									
○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교차하는 모서리 구간 및 모서리로부터 일정거리(5m이상)내에서 출입제어																										
○ 25m이상 간선도로에 직접 접한 토지의 출입제어 -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및 보차혼용통로에 접한 토지에서 도시계획도로(보차혼용통로) 개설이 되기 전까지 한시적 맹지인 경우, 지형·대지여건 상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시설, 주유소, 주차장 및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이 요구되는 시청,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용 ※한시적 맹지 적용하여 차량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토지에 접한 도시계획도로(보차혼용통로)의 개설(확보)시까지 차량출입이 한시적인 사항임을 명시한다.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10m이내																										
적 용 대 상	비 고																									
○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교차하는 모서리 구간 및 모서리로부터 일정거리(5m이상)내에서 출입제어																										
○ 25m이상 간선도로에 직접 접한 토지의 출입제어 -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및 보차혼용통로에 접한 토지에서 도시계획도로(보차혼용통로) 개설이 되기 전까지 한시적 맹지인 경우, 지형·대지여건 상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시설, 주유소, 주차장 및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이 요구되는 시청,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용 ※한시적 맹지 적용하여 차량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토지에 접한 도시계획도로(보차혼용통로)의 개설(확보)시까지 차량출입이 한시적인 사항임을 명시한다.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10m이내																										
제26조 (차량	① 하나의 대지에는 하나의 주차출입구만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대지의 범위는 하나의 건	① 하나의 대지에는 하나의 주차출입구만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대지의 범위는 하나의 건																								

지침	기정	변경
출입구의 설치)	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단, 다음의 경우 차량의 대지내 최대 2개소까지 주차출입구를 허용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5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5세대 이상) 2. 주유소 3. 주차장 4. 병원 ③ 25m이상 도로에 진출입구 설치시 공동진출입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 면에 주차계획이 가로로 2대 이상 연접해있는 경우 주차출입구를 1개로 본다. 단, 건축물을 기준으로 양쪽에 주차출입구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단, 다음의 경우 차량의 대지내 최대 2개소까지 주차출입구를 허용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5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5세대 이상) 2. 주유소 3. 주차장 4. 병원 ③ 25m이상 도로에 진출입구 설치시 공동진출입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접한 대지의 한 면에 주차계획이 가로로 2대 이상 연접해있는 경우 주차출입구를 1개로 본다. 단, 건축물을 기준으로 양쪽에 주차출입구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주차장설치)	① 지구단위계획내 주차장(민간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포함)설치는 주차장법과 고양시 주차장 조례를 따르되 주차건축물은 법과 조례에 불구하고 3층이하로 규제한다.	① 지구단위계획내 주차장(민간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포함)설치는 주차장법과 고양시 주차장 조례를 따르되 주차건축물은 법과 조례에 불구하고 3층이하로 규제한다.
제28조 (건축물의 외장 및 지붕처리 권장사항)	①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중고개 절골취락의 경우 자연친화적 소재(벽돌, 흙, 나무 등)를 권장한다). ②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③ 지구단위계획내 건축물은 경관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평지붕인 경우 옥상녹화)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④ 『건축법』 및 『고양시건축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표 > 지붕형태 예시	①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의 사용을 권장한다(중고개 절골취락의 경우 자연친화적 소재(벽돌, 흙, 나무 등)를 권장한다). ② 건축물 외벽의 색채기조는 인접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품격있는 중후한 색조의 사용을 권장한다. ③ 지구단위계획내 건축물은 경관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평지붕인 경우 옥상녹화)으로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④ 『건축법』 및 『고양시건축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표 > 지붕형태 예시

지침	기정	변경
		
제29조 (옥외 광고물)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른다. ② 상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을 따른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따른다. ② 상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지침」을 따른다.
제30조 (중수 도 및 빗물 이용시 설)	① 중수도 시스템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에는 중수도 시스템 또는 우수 재활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당해 대지 및 건축물에 중수도 및 우수재활용 설비를 조성하여 용적률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중수도 설치의무 대상인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를 부여하지 않음)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인허가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그 적용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② 빗물저수조 - 빗물저수조의 설치는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을 준용한다. - 빗물저수조 설치를 위한 예시도는 다음과 같다. < 빗물저수조 구조도 >  < 빗물저수조 계통도 >  ③ 본 지침 및 관련법령에 의거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정한 용적률 완화가 부여된다.	① 중수도 시스템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에는 중수도 시스템 또는 우수 재활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당해 대지 및 건축물에 중수도 및 우수재활용 설비를 조성하여 용적률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중수도 설치의무 대상인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를 부여하지 않음)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인허가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그 적용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② 빗물저수조 - 빗물저수조의 설치는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을 준용한다. - 빗물저수조 설치를 위한 예시도는 다음과 같다. < 빗물저수조 구조도 >  < 빗물저수조 계통도 >  ③ 본 지침 및 관련법령에 의거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정한 용적률 완화가 부여된다.
제31조 (신재 생 에너지)	①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에 투자 또는 계획하여 총 에너지사용량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② 본 지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정한 용적률 완화가 부여된다.	① 총 건축공사비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에 투자 또는 계획하여 총 에너지사용량의 1%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② 본 지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정한 용적률 완화가 부여된다.

지 침	기 정	변 경
제32조 (공공 기여대 상부지 : 규제사 항) (신설)	-	① 공공기여대상부지내 필지(국·공유지 제외)는 전체 공동개발(권장)을 원칙으로 하여 부지면적의 15%에 상당하는 공공공지를 조성하여 제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필지의 공동개발(권장)이 어려울 경우, 다음 각호 하나 이상의 방식을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공공기여대상부지내 맹지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개별필지 공공공지 조성 후 제공 2.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개설도로 부지 제공 3. 비용 납부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공공공지는 고양시 유지관리부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면이 1/4 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지상에 설치 2. 1개소를 설치하되, 면적은 최소 45㎡이상 3. 최소폭은 5m 이상 4.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④ 제1항, 제2항에 따른 공공기여 이행은 부지면적의 15%에 상당하는 총량범위로 하고, 토지비 및 공공공지 설치비용 등의 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총량기준 부지면적의 15% 토지비 ≤ 1. 공공공지 조성 후 제공 공공공지 토지비+ 공공공지 설치비+ 관련제반비용 + 2.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개설도로 부지제공 미개설도로 토지비+ 관련제반비용 + 3. 비용 납부 비용+ 관련제반비용 ※관련제반비용은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지적분할측량 관련 비용(수수료)을 말한다. 1. 토지비 산정기준 가) 서로 다른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부지가액을 산정한다. · 서로 다른 2개 감정평가기관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2-84호(2023.2.24.))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부지를 평가하여 단위면적당 감정평가액을 산출평균한 값 나) 감정평가기관 선정은 고양시와 주민이 각각

지침	기정	변경
		1개 기관을 선정하며, 감정평가의 공공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공고한 감정평가업자 중에서 선정한다. 다) 감정평가 비용(수수료)은 주민이 부담하되, 공공기여 총량으로 인정한다. 2. 공공공지 설치비용 산정기준 설치비용 = 표준조성비 × 시설면적 ※ 표준조성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조성비 중 공원 표준조성비 ※ 시설면적 : 공공공지 면적(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3.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개설도로 부지면적 산정기준 가) 공공기여대상부지와 미개설도로의 부지가액, 관련제한비용을 산정한 후 미개설도로 면적을 산정한다. 나) 공공기여대상부지와 미개설도로의 부지가액은 제4항제1호에 따른 토지가치 산정기준을 따른다. 미개설도로 면적 = $\frac{(\text{공공기여대상부지 면적의 } 15\% \times \text{공공기여대상 부지가액}) - (\text{관련제한비용})}{\text{미개설도로 부지가액}}$ ※ 관련제한비용은 감정평가·소유권이전·지적분할측량 비용을 말한다. ※ 미개설도로 면적, 공공기여대상부지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4. 비용 납부시 산정기준 가) 공공기여대상 부지 면적의 15%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관련제한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한다. 나) 공공기여대상 부지가액은 제4항제1호에 따른 토지비 산정기준을 따른다. 비용 = (공공기여대상부지 면적의 15% × 공공기여대상 부지가액) - 관련제한비용 ※ 관련제한비용은 감정평가 비용(수수료)을 말한다. ⑤ 공공기여 이행 시기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1. 공공공지 조성 후 제공하는 경우 가) 토지소유자는 사업(건축물)의 준공전에 공공공지의 설치를 완료하여 공공공지의 관리청에 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제출하고 공공공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공공지의 귀속 처리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따른다. 나) 감정평가·소유권이전·지적분할측량 관련 제한비용은 주민이 부담하되 공공기여 총량으로

지 침	기 정	변 경
		인정한다. 2.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개설도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가) 토지소유자는 사업(건축물)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양도될 토지의 세목을 제출하고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나)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지적분할측량 관련 제반비용은 주민이 부담하되 공공기여 총량으로 인정한다. 3. 비용으로 공공기여 하는 경우 가) 비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전까지 납부한다. 다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현금납부액, 납부 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건축 인·허가시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감정평가 비용(수수료)은 주민이 부담하되 공공기여 총량으로 인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공공기여대상부지내 국·공유지 제외한 전체 필지를 공동개발한 경우에는 공동개발에 따른 인센티브(용적률 완화)를 부여한다. ⑦ 공공기여대상부지 내 건축물 허용용도는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14조(허용용도 : 규제사항)를 따른다. (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다세대주택, 다목 연립주택은 불허한다) ⑧ 도면표시 공공기여대상부지(규제) 
제33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①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의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외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3.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리모델링의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건	①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이전·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의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의 경우에는 본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외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3.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리모델링의 경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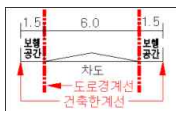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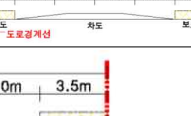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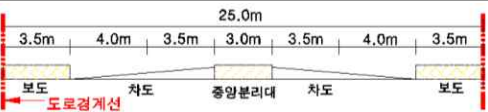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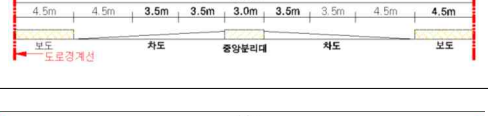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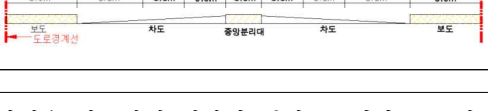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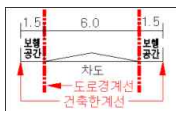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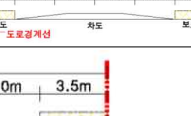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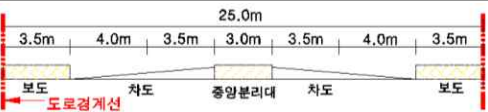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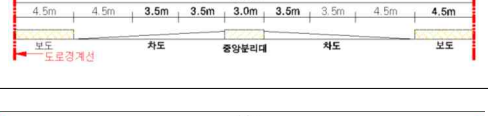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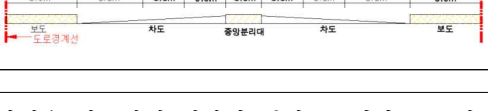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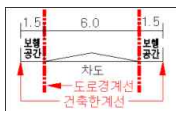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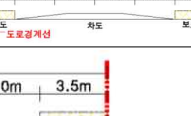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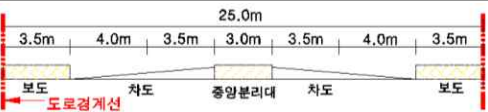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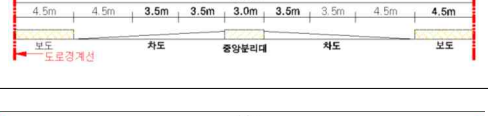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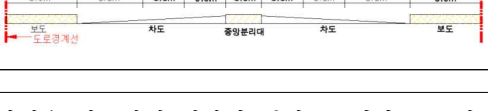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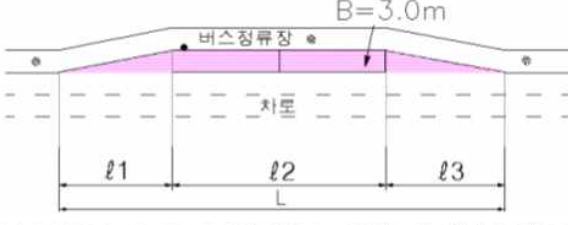
지침	기정	변경																																																																									
	축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다.	축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다.																																																																									
제34조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시침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의 개정·제정 및 변경으로 시행지침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는 개정·제정 및 변경된 지침 및 법령에 따른다. ②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결정조서와 도시계획결정도가 상이한 경우 도시계획결정도에 따른다.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시침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의 개정·제정 및 변경으로 시행지침 내용이 부적합할 경우는 개정·제정 및 변경된 지침 및 법령에 따른다. ②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시계획결정조서와 도시계획결정도가 상이한 경우 도시계획결정도에 따른다.																																																																									
제35조 (용적률 완화)	① 지구단위계획의 다음의 사항을 충족할 시 용적률의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때 상한 용적률은 대규모 취락은 180%이하, 중/소규모 취락 및 신규 10개 취락은 170%이하로 한다. (단,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은 제외한다.)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인센티브 기준) <table><tr><th>구분</th><th>완화항목</th><th>완화조건</th><th>완화내용(%)</th><th>비고</th></tr><tr><td rowspan="3">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사항</td><td>획지분할/합병</td><td>권장사항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05</td><td></td></tr><tr><td>공동개발</td><td>권장사항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05</td><td></td></tr><tr><td>필지교환</td><td>권장사항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05</td><td></td></tr><tr><td>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td><td>전면공지/보차혼용도로/보행자 우선도로</td><td>대지내 공지 제공시</td><td>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td><td>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td></tr><tr><td>용도에 관한 사항</td><td>권장용도</td><td>권장사항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05</td><td>건축연면적의 50%이상 수용시</td></tr><tr><td rowspan="2">경관에 관한 사항</td><td>경사지붕</td><td>권장사항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05</td><td></td></tr><tr><td>담장</td><td>권장사항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05</td><td></td></tr></table>	구분	완화항목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사항	획지분할/합병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공동개발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필지교환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보차혼용도로/보행자 우선도로	대지내 공지 제공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용도에 관한 사항	권장용도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수용시	경관에 관한 사항	경사지붕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담장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① 지구단위계획의 다음의 사항을 충족할 시 용적률의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때 상한 용적률은 대규모 취락은 180%이하, 중/소규모 취락 및 신규 10개 취락은 170%이하로 한다. (단,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은 제외한다.) □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인센티브 기준) <table><tr><th>구분</th><th>완화항목</th><th>완화조건</th><th>완화내용(%)</th><th>비고</th></tr><tr><td rowspan="3">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사항</td><td>획지분할/합병</td><td>권장사항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05</td><td></td></tr><tr><td>공동개발</td><td>권장사항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05</td><td rowspan="2">단, 공공기여 대상부지는 전체 필지(국·공유지제외)의 공동개발에 한하여 적용</td></tr><tr><td>필지교환</td><td>권장사항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05</td></tr><tr><td>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td><td>전면공지/보차혼용도로/보행자 우선도로</td><td>대지내 공지 제공시</td><td>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td><td>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td></tr><tr><td>용도에 관한 사항</td><td>권장용도</td><td>권장사항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05</td><td>건축연면적의 50%이상 수용시</td></tr><tr><td rowspan="2">경관에 관한 사항</td><td>경사지붕</td><td>권장사항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05</td><td></td></tr><tr><td>담장</td><td>권장사항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05</td><td></td></tr></table>	구분	완화항목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사항	획지분할/합병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공동개발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단, 공공기여 대상부지는 전체 필지(국·공유지제외)의 공동개발에 한하여 적용	필지교환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보차혼용도로/보행자 우선도로	대지내 공지 제공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용도에 관한 사항	권장용도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수용시	경관에 관한 사항	경사지붕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담장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구분	완화항목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사항	획지분할/합병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공동개발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필지교환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보차혼용도로/보행자 우선도로	대지내 공지 제공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용도에 관한 사항	권장용도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수용시																																																																							
경관에 관한 사항	경사지붕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담장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구분	완화항목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사항	획지분할/합병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공동개발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단, 공공기여 대상부지는 전체 필지(국·공유지제외)의 공동개발에 한하여 적용																																																																							
	필지교환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전면공지/보차혼용도로/보행자 우선도로	대지내 공지 제공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기준용적률의 10% 범위내																																																																							
용도에 관한 사항	권장용도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축연면적의 50%이상 수용시																																																																							
경관에 관한 사항	경사지붕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담장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지침	기정	변경																																						
	<table><tr><th>구분</th><th>완화항목</th><th>완화조건</th><th>완화내용(%)</th><th>비고</th></tr><tr><td rowspan="2">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td><td>우수 재활용 시설 설치</td><td>권장사항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05</td><td>신규 빗물저류탱크 용량(Ton)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td></tr><tr><td>신재생 에너지 사용</td><td>권장사항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05</td><td>건축공사비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td></tr><tr><td>건축협 정에 관한 사항</td><td>건축협정</td><td>권장사항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2</td><td></td></tr></table> ※ 주 : 1.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구분	완화항목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우수 재활용 시설 설치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신규 빗물저류탱크 용량(Ton)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신재생 에너지 사용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축공사비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건축협 정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2		<table><tr><th>구분</th><th>완화항목</th><th>완화조건</th><th>완화내용(%)</th><th>비고</th></tr><tr><td rowspan="2">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td><td>우수 재활용 시설 설치</td><td>권장사항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05</td><td>신규 빗물저류탱크 용량(Ton)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td></tr><tr><td>신재생 에너지 사용</td><td>권장사항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05</td><td>건축공사비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td></tr><tr><td>건축협 정에 관한 사항</td><td>건축협정</td><td>권장사항 준수시</td><td>기준용적률 × 0.2</td><td></td></tr></table> ※ 주 : 1.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용적률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구분	완화항목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우수 재활용 시설 설치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신규 빗물저류탱크 용량(Ton)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신재생 에너지 사용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축공사비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건축협 정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2	
구분	완화항목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우수 재활용 시설 설치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신규 빗물저류탱크 용량(Ton)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신재생 에너지 사용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축공사비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건축협 정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2																																					
구분	완화항목	완화조건	완화내용(%)	비고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우수 재활용 시설 설치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신규 빗물저류탱크 용량(Ton)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																																				
	신재생 에너지 사용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건축공사비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건축협 정에 관한 사항	건축협정	권장사항 준수시	기준용적률 × 0.2																																					
제36조 (심의 도서)	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심의도서 외에 다음과 같은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부 공간 처리에 대하여 축척 1/100 이상의 도면과 중요 부분에 대하여는 축척 1/30 이상의 지구단위 도면 2. 인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건물이 포함된 배치도와 기존 건물(주변 좌우 각 3개이상의 건물 포함)과 신축건물의 입면이 같이 도시된 정면입면도 또는 현황사진 3. 전면공지의 포장 도면은 공공 공지, 전면 보도, 좌우 연접 전면공지 등의 포장 패턴이 함께 표시된 도면 4.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시 기존 건축물 현황 및 배치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외벽, 담장, 색상 마감 재료 등) 6. 지구단위계획 지침 반영여부 및 필요한 경우 관련 부분 상세한 계획도	① 지구단위계획 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심의도서 외에 다음과 같은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외부 공간 처리에 대하여 축척 1/100 이상의 도면과 중요 부분에 대하여는 축척 1/30 이상의 지구단위 도면 2. 인접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건물이 포함된 배치도와 기존 건물(주변 좌우 각 3개이상의 건물 포함)과 신축건물의 입면이 같이 도시된 정면입면도 또는 현황사진 3. 전면공지의 포장 도면은 공공 공지, 전면 보도, 좌우 연접 전면공지 등의 포장 패턴이 함께 표시된 도면 4.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시 기존 건축물 현황 및 배치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외벽, 담장, 색상 마감 재료 등) 6. 지구단위계획 지침 반영여부 및 필요한 경우 관련 부분 상세한 계획도																																						
제37조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항 내지 4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가 변경할 수 있다.	①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항 내지 4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건축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가 변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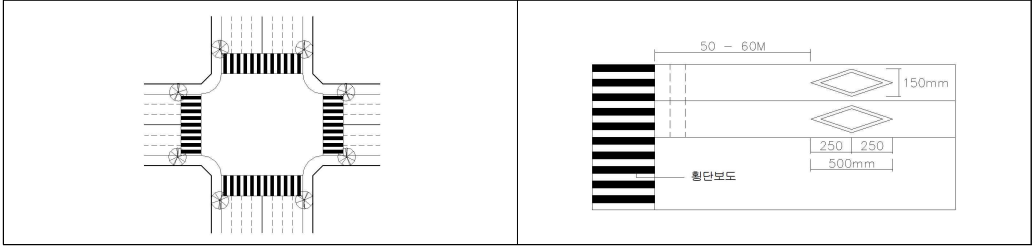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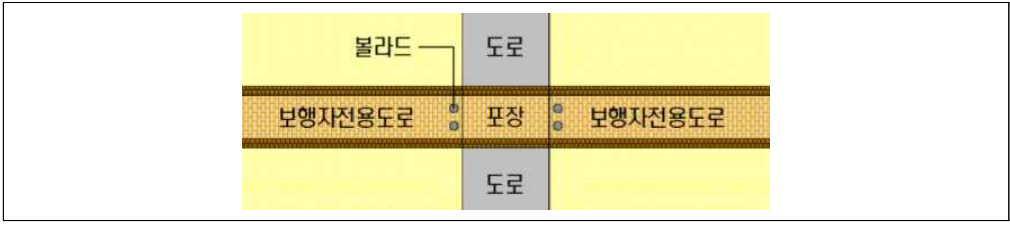
지 침	기 정	변 경
	②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다음과 같다. 1. 보차혼용통로의 위치변경 및 이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위치 변경 (시행지침 제19조 ④의 경우에 한함) 2. 보행자우선통로의 위치변경 및 이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위치 변경 (시행지침 제20조 ④의 경우에 한함)	②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다음과 같다. 1. 보차혼용통로의 위치변경 및 이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위치 변경 (시행지침 제19조 ④의 경우에 한함) 2. 보행자우선통로의 위치변경 및 이에 따른 건축한계선의 위치 변경 (시행지침 제20조 ④의 경우에 한함)

② 공공부분 시행지침(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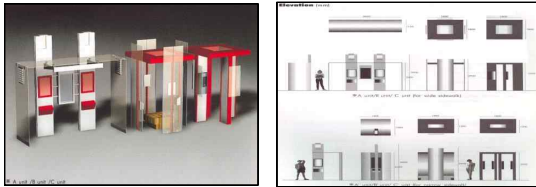
지 침	내 용
제1조 (목적 및 정의)	① 본 공공부분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은 “대규모 3개, 중규모 26개, 소규모 20개, 신규10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공공부분에 적용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공부분”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여 도로 시설물, 녹지, 주차장, 공공이용시설, 옥외가로시설물, 포장, 조명, 도시안내체계등 공공(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조성되는 공간이나 시설로서 공중의 일반적 이용에 개방되는 부분을 말한다.
제2조 (지침 적용의 기본원칙)	① 시행지침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조례, 지침 등에 따른다. ② 시행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현행법규의 허용범위에서 동 시행지침의 내용을 따른다. ③ 단, 시행지침상 규정된 사항이라도 향후 관련법규의 개정예 의거하여 보다 개선된 공공부분계획, 설계내용이 수립되어 동 계획을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 시행지침을 융통성있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4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4조 (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도시계획시설중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해설 및 지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5조 (일반도로)	① 동선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세가로 접속체계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간선가로에 접속되는 곳에 차량출입을 불허하거나 일방통행을 실시한다. ② 도로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건축선 후퇴 부분은 공공을 위한 공간인 차도 및 보도로 조성하되 시설된 보차도와 일체로 조성한다. ③ 차도와 보도 사이의 경계부는 식수대, 가로장치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완충공간으로 확보한다. ④ 일반도로의 횡단구성은 다음의 폭원별 예시도를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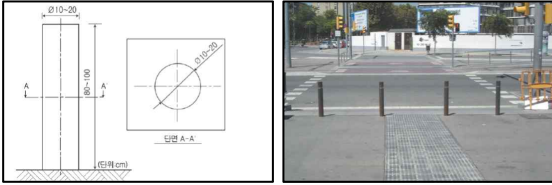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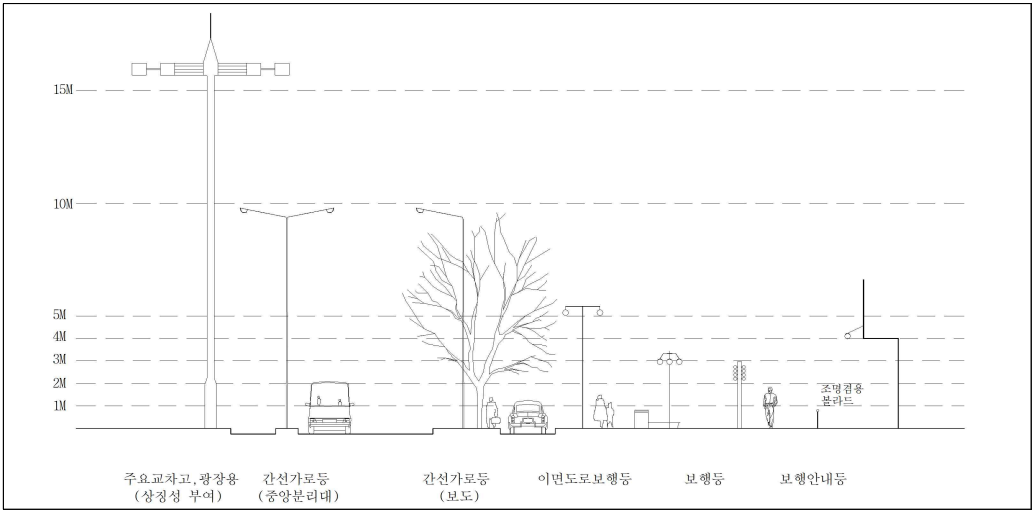
지 침	내 용																																			
	<table><tr><td>6m</td><td></td><td>6m 일방 통행</td><td></td></tr><tr><td>8m 편측 보도</td><td></td><td>8m 보도 미조성</td><td></td></tr><tr><td>10m</td><td></td><td>12m</td><td></td></tr><tr><td>15m</td><td></td><td>20m</td><td></td></tr><tr><td>25m</td><td colspan="3"></td></tr><tr><td>30m</td><td colspan="3"></td></tr><tr><td>35m</td><td colspan="3"></td></tr><tr><td>40m</td><td colspan="3"></td></tr></table>				6m		6m 일방 통행		8m 편측 보도		8m 보도 미조성		10m		12m		15m		20m		25m				30m				35m				40m			
6m		6m 일방 통행																																		
8m 편측 보도		8m 보도 미조성																																		
10m		12m																																		
15m		20m																																		
25m																																				
30m																																				
35m																																				
40m																																				
제6조 (보도)	①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폭원10m이상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한다. 단, 지형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② 보도의 폭원은 최소1.5m이상으로 설치한다. ③ 보도는 연석(경계석) 등을 설치하여 차도로부터 분리한다.																																			
제7조 (버스정차대)	① 버스정차대는 버스중앙차로제구간을 제외하고는 포켓형을 원칙으로 설치한다. ② 버스정차대는 교차로, 횡단보도, 6m이하의 국지도로로부터 다음표와 같이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토록 한다.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전방</th><th colspan="2">후방</th></tr><tr><th>최소</th><th>적정</th><th>최소</th><th>적정</th></tr><tr><td>교차로</td><td>60m</td><td>100m</td><td>30m</td><td>60m</td></tr><tr><td>횡단보도, 6m이하 국지도로</td><td>30m</td><td>30m</td><td>30m</td><td>30m</td></tr></table> ③ 포켓형 버스정차대의 정차폭원은 2.5m이상, 정차대길이는 가속구간, 감속구간, 정차구간으로 하는 기본구조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l1:가속구간(18m), l2:정차구간(30m/2대), l3:감속구간(12m)				구 분	전방		후방		최소	적정	최소	적정	교차로	60m	100m	30m	60m	횡단보도, 6m이하 국지도로	30m	30m	30m	30m													
구 분	전방		후방																																	
	최소	적정	최소	적정																																
교차로	60m	100m	30m	60m																																
횡단보도, 6m이하 국지도로	30m	30m	30m	3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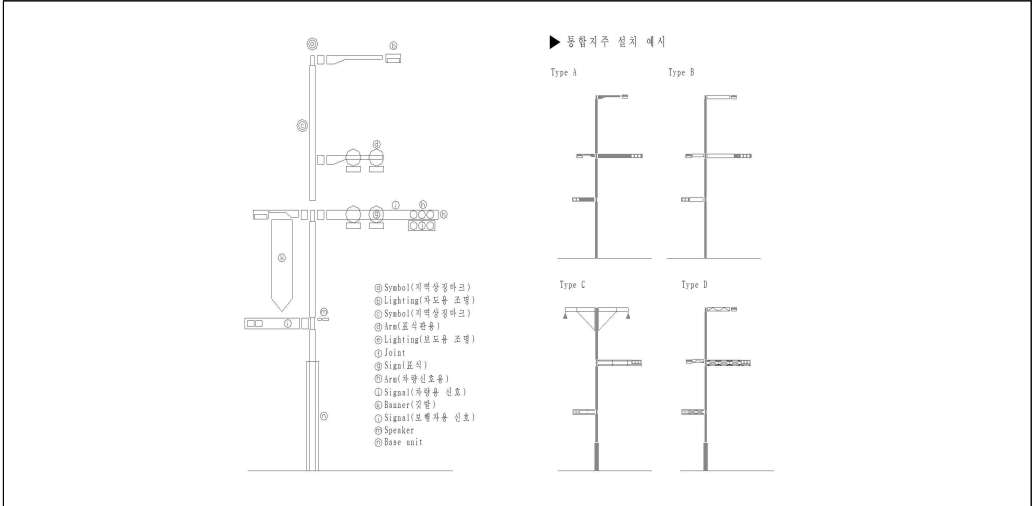
지 침	내 용															
제8조 (중앙분리대)	① 폭원 25m(4차선)이상인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중앙분리대폭원은 1.5m이상, 분리대길이는 30m이상으로 설치한다. ③ 교차로 부근에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고 좌회전 또는 유(U)턴할 수 있는 회전차로로 전용할 수 있다. ④ 중앙분리대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관목과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하되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 부분적 강조, 혹은 시각적인 분절이 필요한 지점에는 교목을 식재할 수 있다.															
제9조 (신호등)	① 교차로에서 평일의 교통량이 다음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8시간이상일 경우 설치한다. <table border="1"><thead><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교통량기준</th></tr></thead><tbody><tr><td colspan="2">교차로</td><td>주도로 교통량(양방향) : 600대/시간</td><td>부도로 교통량(많은 방향) : 200대/시간</td></tr><tr><td rowspan="2">횡단보도</td><td>일반도로</td><td>주도로 교통량(양방향) : 900대/피크시간</td><td>횡단보행자 : 150명/시간</td></tr><tr><td>통학로</td><td>주도로 교통량(양방향) : 900대/통학시간</td><td>학교앞 300m이내 횡단보도</td></tr></tbody></table> ② 신호등을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령에 의한다. ③ 신호등 설치간격은 간선도로의 경우 400~500m, 집산도로의 경우는 200~300m를 기준으로 하되 최소100m이상은 되어야 한다.	구 분		교통량기준		교차로		주도로 교통량(양방향) : 600대/시간	부도로 교통량(많은 방향) : 200대/시간	횡단보도	일반도로	주도로 교통량(양방향) : 900대/피크시간	횡단보행자 : 150명/시간	통학로	주도로 교통량(양방향) : 900대/통학시간	학교앞 300m이내 횡단보도
구 분		교통량기준														
교차로		주도로 교통량(양방향) : 600대/시간	부도로 교통량(많은 방향) : 200대/시간													
횡단보도	일반도로	주도로 교통량(양방향) : 900대/피크시간	횡단보행자 : 150명/시간													
	통학로	주도로 교통량(양방향) : 900대/통학시간	학교앞 300m이내 횡단보도													
제10조 (과속방지 시설)	① 설치간격은 차량이 일정한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m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교차로부근 등 차량의 주행속도가 자연히 감소될 수 있는 구간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③ 설치위치는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통행속도를 시속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행자우선도로 구간에 설치한다. ④ 보행자우선도로 진입부에 과속방지시설인 요철포장을 설치하여 진입차량의 속도를 감소시켜 보행자 보호를 도모한다. ⑤ 과속방지시설의 설치시 차량 진출입구로부터 일정거리(D = 20m내외)내에는 진출입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설치를 배제한다. ⑥ 운전자가 원거리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밝은색으로 요철포장을 한다. ■ 과속방지턱의 예시도 <table border="1"><thead><tr><th>반원형</th><th>평탄형</th><th>험프횡단보도</th><th>교차로형</th></tr></thead><tbody><tr><td></td><td></td><td></td><td></td></tr></tbody></table>	반원형	평탄형	험프횡단보도	교차로형											
반원형	평탄형	험프횡단보도	교차로형													
제11조 (횡단보도)	① 일반적 설치 간격은 100m이하로 계획하고 교차로상 보행동선의 길이를 최소화 하기위해 각각 위치에 최대한 근접시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한다. ② 장애자를 위해 경계석 턱을 낮추고 벨신호기나 횡단보도로 유도하는 점자형보도블럭을 설치한다. ③ 차도와 횡단보도 경계부분에 불법 차량진입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에도 식별가능한 불라드 겸 조명등을 설치한다. ④ 차량운전자에게 횡단보도를 주의시키기 위해 횡단보도 양쪽에 수목을 배치하여 차도폭을 시각적으															

지침	내용
	로 좁게 한다. ⑤ 보행자전용도로에는 따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전구간에 걸쳐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하여 보행자전용도로의 기능을 최적화한다. ■ 횡단보도 설치 예시도 
제12조 (교차로마크)	① 주거지내 국지도로 등의 교차지점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에 교차지점의 존재 및 형태를 나타내는 교차로 마크를 설치한다. ② 교차로마크는 인지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한다.
제13조 (차도부분포장)	① 차도부분에는 기본적으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사용하되,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교차, 접속구간에는 투수콘, 차도용 소형고압블럭 등을 도입하여 장소성을 제공한다.
제14조 (보도부분포장)	① 보도부분포장은 인접주거단지의 구조색과 부합되어야 하며, 가로수 식재간격, 조명등 배치간격 등을 근거로 한 패턴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차로부 포장에서는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턱이 없는 경계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후관리)	① 민간-공공 등 타부분의 공사 시행으로 인한 포장훼손시 공사 완료후 필히 당초대로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사완료후 공사시행자는 일체의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귀 했음을 해당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6조 (포장)	① 소형고압블럭, 투수콘, 컬러아스콘 등을 사용하며 연계되는 보도와는 연속성과 일체감을, 차도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색상, 문양사용 등을 함께 설치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보행환경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교차지점의 처리)	① 보행자전용도로와 차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차량과 보행간의 마찰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② 교차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보행의 연속성제고를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동일한 재료, 색상사용 및 과속방지턱(hump)겸용으로 설치한다. 
제18조 (포장)	① 소형고압블럭, 투수콘, 컬러아스콘 등을 사용한다. ② 차량속도제한을 위하여 도로진출입부에 차로폭좁힘 또는 림블스트립, 림블에어리어, 지글바 등 요철포장의 특수포장방식을 함께 사용한다. ③ 차로폭좁힘부분에는 비상시 긴급차량의 통행이 가능토록 신축성 및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료로 설치하며 야간의 인지성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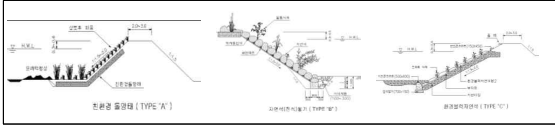
지 침	내 용
제19조 (차량속도제한 등)	① 보행자우선도로에서의 차량속도를 즉시정지가 가능한 서행 등의 제한적 통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고속도(30km/h이하)규제, 일방통행규제 등을 한다.
제20조 (적용범위)	① 도시안내표지시설은 보행안내시설과 차량안내시설로 나누어 지침을 작성한다. ② 본 지침은 도로, 광장, 공공공지 등에 설치되는 가로정보체계에 관한 것으로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은 도로법, 도로표지규칙,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시설 관리편람(경찰청),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편람(건설교통부)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21조 (보행안내체계 조성방식)	① 기능과 형태가 유사한 시설을 통합설계하여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가급적 보행결절부와 주요시설물 진입부에 집단배치하여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② 정보위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표기하여 동질성과 조화를 갖게하여 효율적 안내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다른 가로장치물과의 일괄설계 및 통합배치를 통한 형태적 통일성을 기하여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안내표지판의 높이, 크기, 형태, 색채, 재질 등 식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행 및 보행속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 배치하여야 한다. ⑤ 안내표지판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유사형태의 안내표지판을 통일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안내판의 크기는 단계를 두어 신축성 있게 규격화하여야 한다. ⑥ 식별성과 지역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고양이 독자적인 심볼, 로고 등 그래픽요소를 개발, 활용하여야 한다.
제22조 (보행안내체계 설치위치)	① 보행 결절점이나 교통 결절점에 종합안내시설을 배치하여 구역전체에 대한 정보와 안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안내판으로 계획하여 지구별 전체의 주요도로 및 시설,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다. ② 보행자도로와 대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구역안내판을 설치하여 도보권내에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연속적인 안내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시설물 주변의 결절점 및 교차점에 방향안내판을 설치한다. ④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안내판은 전체 버스노선과 인접주요시설의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 시설안내 표지판의 난립으로 인한 식별성 및 경관불량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표지 규칙에 의거 규격, 표기방법 등을 통일하여 동일성격의 표지판을 한곳에 집중 설치토록 한다.
제23조 (보행자안내시설)	① 보행자전용도로 주요진입부간에 안내표지판 또는 1m 높이의 안내기둥 형태의 안내 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우선도로의 위치를 명확히 전달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차량의 접근을 최소화 한다. ② 보행자전용도로 안내기둥 시설은 기타시설물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장식적이고 조형적인 형태를 지님으로써 시각적으로 눈에 잘 떨어 수 있도록 설계배치한다.
제24조 (차량안내체계 조성방식)	① 표지판에 표기될 안내지명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설정한다. ② 명명체계는 명명단위 우선순위를 지역명 - 시설명 - 도로명 - 구역명 순으로 교차로 위계별로 단계적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 지구내 일방통행체계 구축에 대비하여 일방통행로 진입부에 색채조형 등을 고려한 차량안내기둥을 설치한다.
제25조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방식)	① 교통안내표지판의 배치간격은 표지판의 인지도가 좋고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동작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교차로와 교통량 집중지역에는 배치간격을 줄이도록 한다. ② 규제지시표지는 규제와 지시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 각각 설치하고 주의표지는 위험구역 입구나 혹은 위험지점 이전에 안내표지는 교차로 및 교차로 전방에 배치한다. ③ 교통안내표지판 설치에 장애를 주는 도로의 부속시설은 그 위치와 규모, 진출입상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지 침	내 용
제26조 (도로표지판 설치방식)	① 도로표지판의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하되 도로의 형태에 따라 10도 이내의 안쪽에 설치하며 시각적으로 장애를 주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② 운전자가 다음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에서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③ 방향표지판은 원거리와 근거리의 2개 지명을 표기하고 기존 교통안전시설물을 이용 하거나 부착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제27조 (가로수 수종선택)	① 가로 특성 및 가로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수종을 선정한다. ② 계절성이 풍부하여 토양, 기후 등 생태적 조건이 적합한 향토수종을 선정한다. ③ 이식이 용이하고 생장속도가 빠르고 전정에 잘 견디며, 병충해에 강한 관리가 편리한 수종을 선정한다. ④ 꽃가루 등에 의해 인체에 알러지 질환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수종은 배제한다.
제28조 (가로수 식재방법)	① 도로폭 8m이상, 보도폭 3m이상의 도로에 가로수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그 폭원보다 도로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 ② 가로조명과 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 등이 가로수로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간선도로의 교차부분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인이 도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식재를 배제하여 시야를 개방한다. ④ 2열식재(건물앞 식재포함)를 원칙으로 하고 일반가로변 식재는 간격 6~8m를 유지 하되 버스정차장 주위에는 이용객 및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 일정거리(20m)를 후퇴하여 식재한다. ⑤ 가로변 독자성과 식별성 구현을 위해 일정구간을 기본단위로 수종선택 및 배식기법의 다양화를 기하며 수목을 통한 지역특성의 차별화를 도모한다. ⑥ 보행밀도가 높은 곳의 가로수는 생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수목보호대를 폭 1-2m 이하로 설치하고 수목보호대를 이용한 다용도 휴게벤치공간(공공조경)을 조성한다. ⑦ 지하 공동구와 같은 구조물이 있는 인공지반위에 식재할 경우 1.2m의 토심과 주당 최소 9㎡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건물과 건물 사이에 가려져 있는 녹지 및 조형물의 전방배치를 유도하여 승/하차장 주변 위주로 pocket-park 형식의 정적 휴게공간 설치를 유도한다.
제29조 (설계기준)	① 가로상에 배치되는 각종 가로장치물간의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변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가로장치물의 형태, 재료, 색상을 통합조절하는 가로장치물 개발 기본 전략 프로그램으로 구축하고 이를 가로장치물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가로별 특화를 위해 가로의 성격에 따라 특정가로 단위로 작성하여 가로별 재료, 형태의 동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도로성격에 따라 상호보완적 가로장치물은 배치유형을 도출하여 가급적 통합설치하여 보도구간내에 각종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한다. ④ 주요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집분산 지점에 가로 장치물을 집중설치하여 집약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 가로장치물 예시도 
제30조 (방호)	① 보도가 있는 일반도로에서 보행자의 도로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구간이나 불법 승 하차를 방지하기

지침	내용
울타리)	위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간선가로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방호울타리 예시 
제31조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	①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밝은 색의 반사도로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cm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cm 내외로 하며, 간격은 1.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④ 재질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 (방음벽)	①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목재방음벽, 투명 방음벽, 식생형 방음벽 등으로 설치한다.
제33조 (가로등 배치원칙)	① 조명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도로구조령중 도로의 조명시설 기준에 의해 설치하며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조도수준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교차로, 횡단보도, 커브길, 로타리등 사고 빈발예상 지점은 강화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가로상에는 메탈할라이드의 광원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원변에 있어 국부적으로 조정하여 장소별 특색을 갖도록 한다. ■ 조명시설의 종류(가로등 예시) 
제34조	① 보행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8m를 초과하지 않는 인간적 척도의 규모로 사용하며 보행

지 침	내 용
(보행등 배치원칙)	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소적 특질을 고양할 수 있도록 녹지등, 블라드형등, 장식등 등으로 구분 허용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를 선별 적용한다.
제35조(통합지주 배치원칙)	① 교통안전과 상충되는 부분을 제외한 교차로, 횡단보도등 교통안전시설의 집중설치가 필요한 지점에는 가로등, 신호등, 교통안전표시 등을 통합 설치하여 가로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신호등, 교통안전표시등과 조명시설이 통합설치되는 경우에는 지내력, 풍압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 통합지주 설치 예시  ① Symbol(지적상징마크) ② Lighting(가로등 조명) ③ Symbol(지적상징마크) ④ Arsl(차량신호등) ⑤ Lighting(가로등 조명) ⑥ Inlat ⑦ Sign(표식) ⑧ Arsl(차량신호등) ⑨ Signal(차량용 신호) ⑩ Signal(보행자용 신호) ⑪ Speaker ⑫ Base unit ▶ 통합지주 설치 예시 Type A, Type B, Type C, Type D
제36조(야간조명의 강화)	① 야간보행등을 독특하게 설계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주요교차로의 보차도 경계석은 형광물질이 부착된 것으로 교체하여 야간에도 쉽게 장소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야간 보행밀도가 많은 공공보행통로 주변 차도측으로 보행등 겸 벤치·블라드를 설치하여 야간보행자의 안전과 휴가편익을 도모한다. ③ 기존의 상부조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야간경관 증진을 위해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 ④ 공공이 야간경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적극적인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제37조(적용범위)	① 도시계획시설중 주차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주차장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양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38조(조성원칙)	① 대지의 용도는 평면주차장 조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전거 이용객을 위한 자전거보관소는 일정규모이상 주차장 용지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39조(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도시계획시설중 공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공원및 녹지등에관한법률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40조(공간구성)	① 현대적 시설위주로 조성하며 공원의 규모 및 이용권을 고려하여 공원진출입구를 작성 배치한다. ② 이용형태별로 동적공간, 정적공간으로 구획하여 공간을 구성한다. ③ 놀이, 운동, 휴식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④ 공원내의 포장, 시설등에는 고양시 및 각 취락지구를 상징할수 있는 문양을 도입한다.
제41조(식재)	① 중심공간은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형적으로 식재한다. ② 외곽은 상록수 위주로 차폐식재하고 공원내부는 화목류 및 낙엽교목으로 계절감을 느낄수 있도록

지 침	내 용
	경관녹음식재를 한다. ③ 넓은 녹지의 수종은 단순화하며, 향토수종 위주로 식재한다. ④ 병렬식재, 교차식재, 군식재 등으로 자연스런 경관을 유도한다.
제42조 (포장)	① 부드러운 분위기와 자연적인 소재 위주로 포장한다. ② 격자형 패턴등으로 정형성을 유지한다. ③ 부분적으로 장식포장을 가미한다
제43조 (시설물)	① 각 공간구성에 맞는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명시설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② 시설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③ 모든시설물의 설계는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 경제성을 고려하고 또한, 유지관리도 편리하도록 한다. ④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상면의 수목보호를 위한 충분한 지표면처리 및 상부 구조체에 작용하는 각종 하중(흙무게, 조경식재, 적재하중 등)을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후 설치한다.
제44조 (근린공원)	① 근린주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토록 설치한다. ② 공원은 놀이공간, 운동공간, 편익공간, 관리공간, 휴게공간,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부합되는 시설을 도입하도록 한다. ③ 장소성제공과 독자성부여를 위해 공원출입구, 중심광장지점 등에 심벌, 문양 등의 설치 및 공원별 식재수종의 개성화로 공원별로 특화가 되도록 조성한다.
제45조 (어린이공원)	① 공원은 놀이공간, 휴게공간, 보행공간, 녹지공간으로 구분하여 조성한다. ② 놀이공간에는 어린이들이 호기심 및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단순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복합놀이시설 등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③ 녹지공간에는 녹음성과 관상성, 기능성을 고려하되 고양시 향토수종 및 유실수, 화목류 등을 집중 식재토록 한다. ④ 휴게공간에는 정자, 파고라, 긴의자, 휴지통 등을 설치토록 한다. ⑤ 놀이공간에는 충격을 완화흡수 할 수 있는 모래 등의 바닥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휴게공간이나 보행공간에는 소형고압블럭, 투수콘 등의 내구성 있는 포장재를 사용한다. ⑥ 공원출입구는 2개소이상 설치하며 1개소는 10%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제46조 (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도시계획시설중 완충녹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고양시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47조 (조성원칙)	①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과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사고 재해 방지를 위해 설치하며,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는 시각적, 심리적 효과도 증진시키도록 한다. ② 완충녹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운행과 동시에 차광, 명암순응, 시설유도, 방향성 제고 등을 위해 설치한다.
제48조 (공간구성)	① 일체화된 수목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구성한다. ② 완충녹지의 녹화면적은 80%이상이 되도록 유지한다.
제49조 (식재)	① 도로변 완충녹지는 차음 축조하여 조성한 후, 지엽이 치밀한 상록수와 낙엽수를 혼식하여야 한다. ② 넓은 면적으로 설정된 구간에서는 가급적 도로쪽으로 면하여 밀식하여, 소음방지 및 완충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간선도로와 주거지 사이에 설정된 완충녹지에서는 가급적 가로 및 주거지쪽으로 면하여 식재한다.

지 침	내 용
제50조 (공공공지)	① 일반도로에 면한 공공공지는 주거지경계면에 수목을 식재토록 하며 일부 공간은 휴게공간으로서 설치한다. ② 일반도로에 면한 공공공지의 포장은 소형고압블럭, 투수콘, 컬러아스콘 등으로 설치하며 연계되는 보도와는 연속성 및 일체감을 확보토록 조성한다. ③ 소하천변에 면한 공공공지는 소하천과 적극적인 연계활동이 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④ 소하천변 공공공지의 수목식재는 하천경관과 조화되는 수종을 선택한다.
제51조 (소하천호안)	① 소하천호안은 제방의 법면을 보호하면서 생물의 서식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형의 호안공법으로 조성한다. 다만 통수기능상 하천범람방지, 제방보호 등을 위하여 옹벽, 석축처리가 필요한 하천구간은 예외를 적용한다. 
제52조 (설계도서 작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공공부문을 조성하고자 하는자는 지구단위계획의 공공부문 지침을 기초로 하여 부문별로 면밀한 여건분석, 계획 및 설계 등을 통한 상세도서 작성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53조 (지침의 조정)	① 본 지침상의 예시된 사항이라도 향후 별도의 부문별설계, 구역별설계 등의 상세설계가 추진되어 본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또는 본 지침에 대한 조정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들 “상세설계”를 반영하여 본 지침을 조정·수정할 수 있다. ②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모든 시설은 본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동 지침 승인 이전에 관계법령에 의거 승인을 얻어 기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동 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시설등 타 법령의 시설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 3. 관계법령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본 지침적용이 어려운 경우
부 칙 제1조 (지구단위계획의 적용례)	제1조 (지구단위계획의 적용례) ① 지구단위계획결정 이후 설치하는 공공부문의 모든 기반시설에 적용한다.
부 칙 제2조 (공원, 주차장용지의 ‘대지내 공지’ 이용)	제2조 (공원, 주차장용지의 ‘대지내 공지’ 이용) ① 공원, 주차장용지내에 건축한계선지정으로 생긴 도로경계선사이의 공지는 해당 용지의 지정용도에 도 불구하고 다른 “대지내 공지”와 동일하게 보행 또는 차량을 위한 통로 등의 용도로 조성한다.

□ 결정도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원길 등 2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2.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소	도 로 명 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90-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원길 1 (덕은동)	2023-02-24	20000727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998, 998-1, 998-3, 998-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1로 7 (지축동)	2023-02-24	20191101	고유지명 및 위치 예측성 고려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14-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313-163 (원흥동)	2023-02-24	20000727	서삼릉의 농호를 도로명에 적용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163, 1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17번길 39 (행주내동)	2023-02-24	20100126	행주로 시점에서 170m에 위치한 도로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정로 20 (지축동)	2023-02-24	20190531	고유지명 및 위치 예측성 고려	
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2-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633-10 (사리현동)	2023-02-24	20090911	고양 팔현 중 성현을 도로명에 적용	
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92-2, 593-11, 593-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85-12 (일산동)	2023-02-24	20100126	원일산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811-1, 811-26, 81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146번길 41 (성석동)	2023-02-24	20100126	성석로 시점에서 1460m에 위치한 도로	
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44-11, 544-2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50 (장항동)	2023-02-24	20100126	장항-대화간 도로로 한 자석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2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178-15 (신평동)	2023-02-24	20000727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924-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80 (지축동)	2023-02-24	20190531	고유지명 및 유래 인용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산2길 11 (덕은동)	2023-02-24	20190531	고유지명 및 위치예측성 고려	
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산2길 18 (덕은동)	2023-02-24	20190531	고유지명 및 위치예측성 고려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8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부자로 25 (지축동)	2023-02-24	20190531	고유지명 및 유래 인용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78-44, 78-4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139번길 6 (삼송동)	2023-02-24	20100126	삼송로 시점에서 1390m에 위치한 도로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해 당 없 음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97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976-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 174	2023-02-17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변경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83-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03-8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25-1	2023-02-10	관련지번 변경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83-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03-8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25	2023-02-21	관련지번 변경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폐실건물 고시일자	법정동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178-15	2023-02-20	건물 신축	2011-07-29	신평동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52	2023-02-20	건물 신축	2011-07-29	장항동	
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 85-12	2023-02-20	건물 신축	2011-07-29	일산동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17번길 39	2023-02-20	건물 신축	2011-07-29	행주내동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원길 1	2023-02-22	건물 신축	2015-06-26	덕은동	

공인 신조 개각 및 폐기 공고

고양시 공인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및 폐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4.

일 산 서 구 청 장

1. 등록 및 폐기사유

가. 기존 직인 마모에 따른 교체

나. 통합증명발급기 신규 구입

2. 최초사용 연월일 : 시보 게재일

3. 폐기 공인의 명칭 및 인영

연번	구분	공인의 명칭	인영(종직인)
1	폐기	고양시 일산서구일산2동장인	

4. 등록 공인의 명칭 및 인영

연번	구분	공인의 명칭	인영(종직인)
1	신조	고양시 일산서구일산2동장인	

연번	구분	공인의 명칭	인영(종직인)
2	신조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인 (민원사무전용 덕이동전용)	
3	신조	고양시 일산서구덕이동장인 (민원사무전용)	

공 고

신규 등록 공인을 고양시 공인 조례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및 등록) 및 동 조례 제12조(공고)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의 명칭 및 인영

구분	공인의 명칭	인영
신조	민원사무 고양시일산동구청장인 정발산동전용	
	고양시일산동구 정발산동장인 민원사무전용	

2.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사유 : 통합 인증기 신규 구입에 따른 신조개각

3. 최초사용일 : 시보 게재일

4. 공고자 :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2023. 2. 24.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공 고

고양시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신조 공인 등록 및 폐기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의 명칭 및 인영

구분	공인의 명칭	인영
신조	고양시덕양구 원신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폐기	고양시덕양구 원신동장인 민원사무전용	

- 2.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사유 :원신동 민원실 인증기 교체에 따른 공인 등록 및 이전 인증기 공인 폐기
- 3. 최초사용 연월일 : 2023. 2. 24.(금)
- 4. 공고자 : 고양시 덕양구청장

2023. 2. 24.

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 열람 공고

1. 고양시 고시 제2014-217호(2014.7.18.)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2. 같은 법 제9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 의제 전 일반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5)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4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348-1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
- 명칭 : 고양대중골프장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고양스포츠 김명두 등 82명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424-3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규모

구분	면적(㎡)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합계	230,094	증) 269,232	499,326	
기존9홀	230,094	감) 99	229,995	면적 일부 제척
증설9홀	-	증) 269,331	269,331	

○ 시설 내역

구 분		면 적(㎡)			구성비(%) (변경)	비 고
		당 초	변 경	증 감		
합 계		230,094	499,326	증)269,232	100.0	
체육 시설 용지	소 계	76,472	141,205	증)64,733	28.3	
	티	2,303	8,662	증)6,359	1.7	• 27개소 → 52개소
	그 린	6,466	16,875	증)10,409	3.4	
	병 커	2,951	5,122	증)2,171	1.0	• 33개소 → 50개소
	페어웨이	39,020	58,662	증)19,642	11.8	• 9개소 → 18개소
	러 프	11,954	38,106	증)26,152	7.6	
	연 습 장	13,778	13,778	-	2.8	• 1개소
건축 시설 용지	소 계	2,055	4,566	증)2,511	1.0	
	클럽하우스	-	1,797	증)1,797	0.4	• 1동
	골프연습장	2,004	2,012	증)8	0.4	• 1동, 112타석
	티하우스	51	133	증)82	0.1	• 1동 → 2동
	관 리 동	-	624	증)624	0.1	• 1동, 연습장 하부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19,388	42,266	증)22,878	8.4	
	도 로	10,461	22,182	증)11,721	4.4	• 카트로, 관리도로 등
	저 류 지	8,927	20,084	증)11,157	4.0	• 4개소 → 14개소
녹지	소 계	132,179	311,289	증)179,110	62.3	
	조성녹지	67,249	194,419	증)127,170	38.9	
	원형보전지	64,930	116,870	증)51,940	23.4	

○ 건축물 및 공작물 내역

구 분			계(㎡)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비고	
건 축 물	계(㎡)	당초	3,975.06	1,236.44	1,721.97	1,016.65	-		
		변경	10,388.33	2,606.55	3,607.24	3,157.89	1,016.65		
		증감	증)6,413.27	증)1,370.11	증)1,885.27	증)2,141.24	증)1,016.65		
	골프 연습장	당초	3,924.53	1,236.44	1,671.44	1,016.65	-		
		변경	5,592.55	1,236.44	1,671.44	1,668.02	1,016.65		
		변경 내용	- 지하1층 : 로비, 락카 등 - 지상1층 : 샤워실 식당 연습장 등 - 지상2층 : 프로룸, 연습장 - 지상3층 : 홀, 강의실						
		증감	증)1,668.02	-	-	증)651.37	증)1,016.65		
	티하우스	당초	50.53	-	50.53	-	-		
		변경	115.03	-	115.03	-	-		
		변경 내용	- 1개소→2개소						
		증감	증)64.50	-	증)64.50	-	-		
	클럽 하우스	당초	-	-	-	-	-		
		변경	3,956.94	1,370.11	1,719.00	867.83	-		
		변경 내용	- 지하1층 : 카트고, 캐디대기실, 샤워실 등 - 지상1층 : 사무실, 사우나실, 라운지, 스타트라운지, 프로샵 등 - 지상2층 : 식당, 회의실, 사무실 등						
		증감	증)3,956.94	증)1,370.11	증)1,719.00	증)867.83	-		
	관리동	당초	-	-	-	-	-		
		변경	723.81	-	101.77	622.04	-		
		변경 내용	- 지상1층 : 세차장, 정비관련 창고·사무실, 주차장 등 - 지상2층 : 비료·농약창고, 숙소, 휴게실,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세탁실, 사무실, 주방, 식당 등						
		증감	증)723.81	-	증)101.77	증)622.04	-		
구 분			면적(㎡)					변경없음 277대	
공 작 물	연습장 하부 주차장	당초	10,925.67						
		변경	10,925.67						
		증감	-						
	관리동 주차장	당초	-					신설 27대	
		변경	395.08						
		증감	증) 395.08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5)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1. 당초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구	읍·면·동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계					241,627	229,995						
1	당초	덕양구	주교동	산193	체	397	39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2	당초	덕양구	주교동	산195	체	496	49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3	당초	덕양구	주교동	산258	체	548	54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4	당초	덕양구	주교동	산259	체	77	7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5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24-2	전	124	124	고양시 덕양 산화로	이*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원당**** 조합	근저당/ 지상권
6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24-3	체	20	20	고양시 덕양 산화로	이*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원당**** 조합	근저당/ 지상권
7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0-6	임	426	42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8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0-7	임	11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9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0-8	체	103	10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0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0-10	임	735	73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1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0-13	체	684	68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2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0-14	임	5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3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0-15	체	18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4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0-17	체	4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5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0-18	임	2,269	2,26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6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0-20	도	140	140	고양시 일산동구 산화동	(주)***신 탁			
17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0-21	체	156	15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8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0-22	임	19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9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0-23	임	2,187	2,18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변경	덕양구	주교동	1490-23	임	2,187	2,088					
20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0-29	임	47	47	고양시 일산동구 산화동	김*두			
21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6-1	체	152	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22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6-2	체	543	54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23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7-2	전	301	30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24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7-8	체	2,462	2,46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25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7-13	체	1,254	1,25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26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7-14	유	2,991	2,99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27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7-15	체	520	5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28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8-1	전	120	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29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8-2	체	564	56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30	당초	덕양구	주교동	1499	체	36,247	36,24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31	당초	덕양구	주교동	1505-3	임	1,831	1,8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구	읍·면·동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32	당초	덕양구	주교동	1505-4	임	1,495	1,49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33	당초	덕양구	주교동	1549-1	체	6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34	당초	덕양구	주교동	1549-2	체	135	13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35	당초	덕양구	주교동	1549-3	체	474	47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36	당초	덕양구	주교동	1549-5	체	51	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37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산142-3	체	457	45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38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산142-4	체	42	4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39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산143-1	체	360	36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40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산190	체	105	10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41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5	체	1,523	1,5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42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13	체	234	23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43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14	체	366	36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44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15	임	239	239	-	국(국토 교통부)			
45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16	체	8	8	고양시 일산동 장항동	김*자			
46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17	체	32,045	32,04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47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18	체	139	13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48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19	체	27	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49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20	임	74	74	-	국(국토 교통부)			
50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21	임	5	5	-	국(국토 교통부)			
51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26	체	1,342	1,34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52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27	임	13,921	13,9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이*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서대문** *장	근저당
53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28	임	1,039	1,03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54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29	체	73	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55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30	임	913	9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56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31	임	804	80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57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32	임	422	422	고양시 일산동 장항동	김*자			
58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33	임	2,737	2,73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59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34	임	2,012	2,0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60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35	임	318	3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61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36	임	231	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62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37	임	199	19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63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38	임	5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64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39	임	50	5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65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40	임	31	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66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41	임	104	10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구	읍·면·동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67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42	임	9	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68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43	체	1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69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46	임	146	14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70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47	체	219	2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이*희			
71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48	체	141	1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이*희			
72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54	임	3	3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한국전력 공사			
73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48-55	임	10	10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한국전력 공사			
74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50	체	763	76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75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50-2	체	201	20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76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50-3	체	317	31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77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50-5	체	92	92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봉길	김*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동서울** **조합	근저당
78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50-6	체	1,630	1,6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79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50-7	체	2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80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50-9	체	5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81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350-11	체	73	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82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02	체	3,973	3,9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83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02-1	체	50	5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84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06	체	906	90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85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06-1	체	216	21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86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06-3	체	9,589	9,5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87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06-4	임	834	83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88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06-5	체	6,881	6,88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89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06-6	임	1,596	1,59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90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06-7	임	872	87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91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06-8	임	2,151	2,1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92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06-9	체	3,501	3,50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93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06-10	임	33	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94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06-11	임	2,313	2,31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95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06-12	체	4,730	4,7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96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06-13	임	3,489	3,4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97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07	체	985	98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98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08	체	14,759	14,75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99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09-2	체	299	29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00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11	체	1,299	1,29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영심길	인동**** *****중 친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구	읍·면·동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01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13-1	체	3,112	3,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02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13-3	체	203	20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03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15-1	체	1,962	1,96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04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15-3	체	346	34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05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15-4	임	789	7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06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15-5	임	2,370	2,37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07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15-6	체	319	31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08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15-9	체	210	2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09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15-10	체	4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10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15-11	체	268	26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11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15-12	임	1,775	1,7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12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15-13	체	3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13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15-14	체	3,396	3,39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14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15-16	체	5,673	5,6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15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15-17	임	131	1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16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15-18	임	107	10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17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22-2	임	2,437	2,43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산황동	밀양**** ***** 중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18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22-3	체	312	31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산황동	밀양**** ***** 중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19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24-10	체	116	11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20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24-15	체	2,472	2,47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21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24-17	체	465	46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22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24-19	목	288	28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23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24-20	임	931	9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24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24-21	임	301	30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25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24-22	임	65	6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26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24-23	임	277	27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27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24-24	임	256	25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28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25-1	체	200	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29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25-2	체	84	8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30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26-6	체	497	497	고양군 지도읍 대장리	정*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구	읍·면·동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31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426-7	임	278	278	고양군 지도읍 대장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정*복 (주)***신 탁			
132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713-1	체	356	35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33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713-3	체	517	51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34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809-1	체	316	31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35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809-2	체	493	4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36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810	체	540	54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37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810-1	체	269	26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38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810-2	체	89	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39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812	체	1,971	1,9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40	당초	일산동구	산황동	812-2	체	168	16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41	당초	일산동구	풍동	43-2	임	11,746	2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산화로	임*만			
142	당초	일산동구	풍동	43-14	체	88	88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임*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산화로	임*만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임*만			
143	당초	일산동구	풍동	45-2	답	171	17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영심길	장*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장*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장*환			
144	당초	일산동구	풍동	45-3	답	4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장*환			
145	당초	일산동구	풍동	45-4	체	1,631	1,6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영심길	인동**** *****중 친회			
146	당초	일산동구	풍동	46	체	26	2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47	당초	일산동구	풍동	46-1	체	436	4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48	당초	일산동구	풍동	47-1	체	9,892	9,89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49	당초	일산동구	풍동	47-3	답	63	6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영심길	인동**** *****중 친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장*환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장*현			
150	당초	일산동구	풍동	47-7	체	2,325	2,32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영심길	인동**** *****중 친회			
151	당초	일산동구	풍동	94-5	체	5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52	당초	일산동구	풍동	676	체	443	44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53	당초	일산동구	풍동	697	체	866	86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54	당초	일산동구	풍동	697-1	구	15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55	당초	일산동구	풍동	697-2	체	16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56	당초	일산동구	풍동	953-1	체	4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157	당초	일산동구	풍동	953-2	체	5	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2. 변경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구	읍·면·동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계					274,451	269,331						
1	증설	덕양구	주교동	1490	전	3,406	3,344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이*도			
2	증설	덕양구	주교동	1494	대	186	18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인동**** *****중 친회			
3	증설	덕양구	주교동	1494-1	도	4	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산향로	일산**** *㈜			
4	증설	덕양구	주교동	1494-2	대	144	14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인동**** *****중 친회			
5	증설	덕양구	주교동	1494-3	도	12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인동**** *****중 친회			
6	증설	덕양구	주교동	1494-4	전	1,096	1,09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윤*빈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은행㈜ 이*경	근저당 근저당
7	증설	덕양구	주교동	1494-5	도	3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신 탁			
8	증설	덕양구	주교동	1495	전	912	9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신 탁			
9	증설	덕양구	주교동	1496	전	993	9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신 탁			
10	증설	덕양구	주교동	1497	대	330	3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신 탁			
11	증설	덕양구	주교동	1497-3	대	330	3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신 탁			
12	증설	덕양구	주교동	1497-4	도	76	7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신 탁			
13	증설	덕양구	주교동	1497-5	유	108	1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신 탁			
14	증설	덕양구	주교동	1497-6	잡	930	9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신 탁			
15	증설	덕양구	주교동	1497-7	유	306	30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신 탁			
16	증설	덕양구	주교동	1497-9	도	2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신 탁			
17	증설	덕양구	주교동	1548	도	569	270	-	국(국토 교통부)			
18	증설	덕양구	주교동	1549	구	440	440	-	국(국토 교통부)			
19	증설	일산동구	산향동	산145	임	2,975	2,975	고양시 일산구 산향동	김*태			
								고양시 일산구 산향동	김*호			
								고양시 일산구 산향동	김*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향로	김*봉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향로	김*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동명북1길	김*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동명북1길	김*환			
20	증설	일산동구	산향동	산146-1	임	5,554	5,554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김*환			
								고양시 일산동 산향동	정*식			
21	증설	일산동구	산향동	산146-2	임	298	298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김*진			
22	증설	일산동구	산향동	산149	임	13,190	13,19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김*순			
23	증설	일산동구	산향동	산150	임	3,669	3,66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춘길	김*형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크릭우드 드라이브	이*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이*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구	읍·면·동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24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51-1	임	1,388	1,38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이*숙				
25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52-1	임	1,587	1,58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정*자				
26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53-2	임	3,524	3,52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감내길	신*래				
27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53-4	임	769	17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신*래				
28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54	임	1,388	1,388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김*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이*이				
29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55	임	2,380	2,3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최*진				
								광명시 광명동	최*철				
30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56	임	595	595	고양군 지도읍 내곡리	윤*진				
31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57-1	임	11,592	11,592	서울 강서구 등촌동	최*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	지상권	
								인천시 남구 주안동	최*환				
32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57-4	임	397	39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향2길	김*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김*창				
33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58	임	1,488	1,488	서울 서대문구 신영동	심*현				
34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59	임	1,924	1,924	지도면 내곡리	지*기				
35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60-1	임	992	992	고양시 주엽동	김*혜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김*경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김*석	파주시 교하면 와동리	유*상	근저당	
								고양시 주엽동	이*순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유*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한*숙				
36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60-2	임	3,471	3,47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향2길	김*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김*창				
37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61	임	298	298	서울 성북구 돈암동	최*환				
								서울 성북구 정릉동	최*환				
38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62	임	2,579	2,57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로	한*희				
39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62-1	임	1,024	1,024	서울 은평구 응암동	강*석				
40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63	임	793	79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김*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김*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김*수				
41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64	임	694	694	서울 성북구 돈암동	최*환				
								서울 성북구 정릉동	최*환				
42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65	임	893	893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박*숙				
43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66	임	7,041	6,65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이*식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이*택	근저당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유*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유*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권*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권*원		
44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68-2	임	496	49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종로	노*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이*관	경기도 고양 덕양구 원흥4로	고양동부 *****	근저당/ 지상권	
45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산169	임	1,091	1,09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김*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구	읍·면·동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46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산170-1	임	7,571	7,571	경기도 고양시 덕양 토당로	이*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이*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이*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이*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	이*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이*덕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이*진			
47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산170-2	임	694	694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	주*만			
48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산170-3	임	968	968	서울 마포구 성산동	박*병			
								고양시 일산구 산화동	함*석			
49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산170-4	임	1,279	1,27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변*재			
50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산171	임	1,388	1,388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조*미			
51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산173	임	8,596	8,59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김*송			
52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산174	임	4,264	4,264	경기도 고양시 덕양 백양로	김*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길	지*남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	윤*한	근저당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길	지*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지*복			
53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산175	임	4,959	4,959	서울 마포구 아현동	김*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촌길	김*형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크릭우드 드라이브	이*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이*영			
54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산176	임	595	595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정*모			
								고양군 일산을 산화리	정*모			
55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산177	임	9,719	9,719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김*식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박*자			
								고양군 중면 풍리	양*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양*선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양*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2로	양*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양*수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양*봉			
56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산178	임	4,463	4,463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윤*휘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황*			
								고양시 일산동	양*승			
								일산동구 산화동	임*만			
								서울 성북구 수유동	배*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승			
								고양군 지도면 내곡리	김*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홍*숙			
60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산181-1	임	4,661	4,41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	장*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장*일			
61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산182	임	7,934	7,836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장*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구	읍·면·동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62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산185	임	4,562	4,562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김*일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김*태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김*태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김*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김*상			
63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산186	임	3,669	3,669	서울 성북구 쌍문동	최*호			
64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산187	임	5,355	5,355	경기도 고양시 덕양 호수로	정*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황*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황*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고양**** *	근저당/ 지상권
65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348-1	전	1,269	1,269	경기도 고양시 덕양 내곡길	박*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신덕로	박*수			
								경기도 하남시 덕산로	박*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2로	박*순			
								고양군 지도면 내곡리	박*선			
								고양군 지도면 내곡리	박*재			
								고양군 지도면 내곡리	박*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3로	박*계			
								경기도 파주시 한울로	박*례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	박*분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원통이길	박*애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박*순			
								고양군 지도면 행주내리	박*근			
								고양군 지도면 내곡리	박*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박*수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박*순			
								고양군 지도면 내곡리	박*봉			
								고양군 지도면 내곡리	박*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박*천			
								고양군 지도면 내곡리	박*식			
								고양군 지도면 내곡리	박*영			
								경기도 파주시 다락1길	박*운			
								경기도 파주시 동편길	박*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손*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이*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길	최*자			
66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348-2	전	1,577	1,577	일산동 산화동	임*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한국**** 일산**** **	지상권 근저당
67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348-6	임	2,649	2,071	서울 종로구 청운동	조*성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한국전력 공사			
68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348-8	임	254	254	-	국(국토 교통부)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한국전력 공사			
69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350-1	전	1,088	1,088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봉길	김*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동서울** ****	근저당
70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397	묘	3,845	3,845	고양군 중면 산황리	임*득			
71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398	전	499	499	고양군 중면 산황리	임*선			
72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412	전	2,932	2,932	고양군 원당읍 식사리	장*만			
72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412	전	2,932	2,93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장*석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일산**** **	근저당
73	증설	일산동구	산화동	414	전	906	90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구	읍·면·동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74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16	전	605	605	고양군 지도면 행주외리	송*자			
75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16-3	전	981	622	경기도 파주시 운정로	이*화			
76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19	전	298	298	고양군 일산을 풍리	정*모			
77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20	전	1,431	1,43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김*환			
78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20-1	임	337	337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김*우			
79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20-2	임	1,349	1,349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백			
80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21-1	전	1,190	1,079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김*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한국****	지상권
81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21-2	전	1,788	1,788	고양군 증면 산황리	김*섭			
82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22	전	2,533	2,216	고양군 일산을 백석리	밀양**** *****중 친회			
83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22-1	임	30,878	30,6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밀양**** *****중 친회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이*영			
84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22-4	전	2,645	2,482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홍*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지도**** **	근저당
85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22-5	전	200	200	고양군 일산을 백석리	밀양**** *****중 친회			
86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24	전	1,392	1,392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봉길	김*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점)	동서울** ****	
87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24-3	대	430	4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88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24-4	전	959	95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피앤에스타워)	(주)***신 탁			
89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24-13	임	1,157	1,10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90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24-18	도	7	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주)***신 탁			
91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33-9	임	3,792	3,761	-	국(산림 청)			
92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38	전	2,337	2,33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김*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한국****	지상권
93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39-1	전	863	863	서울 구로구 구로동	김*자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김*수	서울 중구 회현동	(주)우리**	근저당/ 지상권
94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39-2	전	96	9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정*자			
95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476-1	전	536	536	서울 성북구 돈암동	최*환			
96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638-6	전	633	625	경기도 고양시 덕양 화중로	노*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이*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4로	고양동부 *****	근저당/ 지상권
97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699-3	임	9,291	9,291	경기도 고양시 덕양 행신동	정*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정*석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정*웅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정*진			
98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701	전	645	64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로	김*두			
99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702	전	354	35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로	김*두			
100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713-2	전	3,147	3,14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장*석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일산**** **	근저당
101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714	전	704	704	서울 성북구 돈암동	최*환			
102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715	답	2,162	2,16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장*석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일산**** **	근저당
103	증설	일산동구	산황동	806	도	1,391	62	-	국(국토 교통부)			
104	증설	일산동구	풍동	40	임	4,316	4,316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남로	장*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고양**** *	근저당/ 지상권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장*우			
105	증설	일산동구	풍동	40-7	임	1,079	1,07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장*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시·군·구	읍·면·동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06	증설	일산동구	풍동	43-2	임	11,746	11,53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산황로)	임*만				
								고양시 산황동	임*만				
107	증설	일산동구	풍동	44	전	418	418	고양군 원당읍 식사리	장*만				
108	증설	일산동구	풍동	44-1	전	385	385	고양군 원당읍 식사리	장*만				
109	증설	일산동구	풍동	45	답	165	16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영심길	장*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장*환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장*환				